

인권정보자료실
Ia1.26.8

사회권 제2차 반박보고서 활동자료집 - 1

사회권위원회 제출자료

사회권연대회의

2001년 8월

사회권 제2차 반박보고서
활동자료집 1
사회권위원회제출자료

2001.8

인권정보자료실
Ia1.26.8

**사회권 제2차 반박보고서
활동자료집 - 1**

사회권위원회 제출자료

사회권연대회의

2001년 8월

〈목차〉

- 사회권규약의 이행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
 - 사회권위원회 활동에 대한 NGO의 참여
- 약식보고서(한글,영문 /2000년 8월)
- List of Issues(한글,영문 /2000년 9월)
- List of Issues에 대한 견해(한글,영문 /2000년 12월)
- 서면발표문(한글,영문 /2001년 1월)
- 본보고서(한글,영문 /2001년 4월)
- 요약문(한글,영문)
- 구두발표문
- List of Issues에 대한 정부답변서
- 정부답변서에 대한 Comments
- 최종견해(NGOs' Draft)
- CESCRC 제25차 회기
 - 1) Press Release
 - 2) Summary Record
 - 3) 녹취록
- 위원회 최종견해(한글,영문 /2001년 5월)
- 대정부 공개질의서(2001년 5월)

사회권규약의 이행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
-사회권위원회 활동에 대한 NGO의 참여-
(한글, 영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의 이행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NGO의 참여

사무국 노트

E/C.12/2000/6
 7 July 2000

* III, IV, V는 미번역

목차

	문단	쪽
I. 서문	1-3	3
II. 위원회의 정부 보고서 검토 과정 시 NGO의 참여	4-29	3
A. 종합	4-9	3
B. 정부보고서의 제출 이후 NGO의 참여	10-13	5
C. 회기 전 실무분과회의 활동에 대한 NGO의 참여	14-20	6
D. 위원회 회기 시 NGO의 참여	21-24	7
E. 정부 보고 검토 후 위원회의 후속 작업 시 NGO의 참여	25-27	9
F. 보고하지 않은 국가들에서 규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 시 NGO의 참여	28-29	9
III. 위원회의 종합 논의(General Discussion)에 NGO의 참여	30-31	10
IV. 일반논평의 작성과 채택 관련 위원회의 활동	32-33	10
V. 출처	34-36	11
Annex. 참고자료		
표 1		

I. 서문

1.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 지역, 국내 혹은 국제단체를 막론하고 또 경제사회이사의 협의자격을 가졌건 안 가졌건 - 모든 NGO들과의 협력에 큰 중요성을 두고 있다. 위원회는 자신들의 활동에 NGO들이 참여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장려해왔다. NGO들이 가능한 가장 널리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1993년 5월 12일 8차 회기 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활동에의 NGO 참여"라는 제목의 문서(E/C.12/1993/WP.14)를 채택했는데, 이는 위원회 활동에 NGO가 참여할 수 있는 양식을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문서에 설명된 기본적인 원칙은 위원회의 경험이 진화함에 따라, 그때 이래로 계속 보완되어 왔다. 이러한 발전은 위원회의 연례 보고서 중 "위원회의 현재 활동방식에 대한 개요"라 이름지어진 장에 반영되어 있다.

2. 본 문서는, 비준국들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부보고서의 심의를 통한 국제 감시(monitoring)의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 위원회와 NGO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NGO들을 위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한다.

3. NGO의 참여에 개방적인 위원회의 주요 활동들은 :

- (i) 정부 보고서의 검토
- (ii) 종합 논의(General Discussion)
- (iii) 일반논평(General Comments)의 기초

II. 위원회의 정부 보고서 검토 과정 시 NGO의 참여

A. 종합

4. 정부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NGO는 다음과 같은 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다.(상세한 정보는 아래에 있다)

- (i) 규약의 발효 : 일단 정부가 규약을 비준하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에서 활동하는 국내 NGO들은 위원회의 사무국과 연락 관계를 맺는 것이 장려된다(연락 주소는 본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돼 있다).
- (ii) 정부 보고서 접수로부터 심의 전까지 : 관련 정보의 제출(사무국이 해당 정부 파일에 보관·유지한다)
- (iii) 회기 전 실무분과 : 주요 문제에 대한 질의목록(the list of issues)의 초안을 작성하는 위원에게 직접 정보를 제출(사무국에 복사본을 보내고)하고/하거나 사무국에 서면 정보를 제출하고/하거나 회기 전 실무분과에서 구두 설명을 함
- (iv) 정부 보고서 심의 회기 : 서면 성명서와/혹은 보고서 형태의 정보를 제출하고/하거나 위원회의 "NGO 청문회"의 틀 안에서 구두 설명을 함; 정부 대표들과 위원들 간의 대화 청취

(v) 위원회의 최종견해 후속 : 해당국 내에서 위원회의 최종 견해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사무국에 제출

5. 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정보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a) 규약에 구체화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b) 위원회 혹은 회기전 실무분과가 심의하는 사안으로서 적절해야 한다. (c) 자료의 출처에 기반해 참고문헌이 제대로 명시되어야 한다. (d) 간결해야 한다. (e) 신뢰할만 것이어야 하며 독설적이지 않아야 한다. NGO는 규약의 모든 조항들과 관련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그 경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6조와 17조 하에서 가입국이 제출하는 보고서의 형태와 내용에 관한 종합 가이드라인(개정판)"(E/C.12/1991/1)을 따르는 것이 유용하다. 가이드라인은 가입국들의 보고서 작성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것은 공식 보고서의 구조를 따르는 (parallel) 보고서의 형태에 알맞으며, 대등하게 주어진 정보들을 위원들이 비교 심의할 수 있도록 돕는다. NGO는 또한 몇몇 조항 혹은 단 하나의 조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6. 위원회에 정보를 제출할 때 국내 NGO들이 협력, 조정, 협의하는 것을 권장한다. 가능하다면 많은 NGO들의 광범한 여론을 반영하여 하나의 통합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NGO들이 개별적으로 자신들의 우선 관심 영역에 대해 보다 초점을 맞춰 상세한 정보를 함께 제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조정이 사무국과 위원들이 비준국가 내에서 규약의 현재 이행 상태에 대해 더 명확히 볼 수 있도록 돕는다. NGO 관점에서 보자면, 공동제출함으로써 NGO 정보들 간의 중복과 모순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정보의 중복은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위원들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정보들 간의 모순은 NGO 정보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정보의 중복과 모순 모두 NGO의 입장과 주장을 약화시킨다. 다른 한편, 앞에서 이야기한 조정과 일관성 및 정확성은 발표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뢰를 증가시키고 NGO가 의도했던 결과를 보장한다.

7. 위원회 회의, 회기전 실무분과 혹은 위원회의 NGO 청문회에 참석을 원하는 NGO는 미리 사무국에 신임장을 신청해야 한다. 대표단의 모든 일원들은 제네바의 Villa "Les Feuillantines", 13, avenue de la Paix에 위치한 제네바유엔 사무소(office) 안전보장과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 30분 사이에 회기 기간 동안 유효한 신분 증명 뱃지를 받을 수 있다. 단, 신임장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주어야 한다. 발언을 원하는 NGO는 시청각 시설이 필요한지를 알려야 한다. 이는 사무국이 관련 업무들을 계획하고 모든 참석자들이 적절한 시간과 시설을 가지고 발언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발언을 원하는 NGO의 숫자에 따라 발언시간은 다를 수 있긴 하지만, 한 NGO에게 배당되는 평균 발언 시간은 15분이다.

8. 위원회 공식 언어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와 러시아어이다. 영어로 작성된 문서는 가장 널리 통용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재정이 허락한다면, 자료 제출 시 쓰여진 언어 외에 위원회 공식 언어들로 최소한 내용 요약문을 제출하는 것이 유용하다.

9. 회기 전과 회기 동안, 사무국은 해당국의 제네바 유엔 대표부를 통해 정부에 NGO가 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정보의 복사본을 제공한다.

B. 정부 보고서의 제출 후 NGO의 참여

10. 규약을 비준한 정부는 국제협력 노력을 포함해 규약에 명시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위해 취한 조치들에 대해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정부 보고서는 위 단락 5에서 언급한 종합 가이드라인(개정판)에 부합해야 한다.

11. 정부가 사무국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의 정부보고서의 심의에 이르는 절차가 시작된다. 일단 사무국이 보고서를 받으면 유엔의 6개 공식언어(영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라비아어 및 중국어)로 번역하도록 보낸다. 보고서는 모든 언어판이 준비되었을 때만 유엔 공식 문서가 된다. 길게는 12개월까지 걸릴 수도 있다. 그 사이에 위원회 사무국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에서 활동하는 국내 NGO 리스트를 만들고 해당국 내에서 규약이 어떻게 이행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 이들 NGO에게 연락을 취한다. 관련 자료들(핵심 자료, 정부 보고서, 질의서(list of issues), 개정판 종합 가이드라인, NGO 참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편지와 함께 동봉해 NGO에 보낸다. 위원회와의 협력에 관심이 있는 국내 NGO들은 일단 자신의 나라에서 규약이 발효하면 사무국에 연락을 취할 것을 장려한다. 이는 나중에, 정부 보고서와 관련해 국내 NGO로부터 정보를 구할 때 사무국에 도움이 될 것이다.

12. 위원회는 또한 정부가 보고 절차를 포함해 규약의 이행에 관한 사안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NGO 및 시민사회와 협의할 것을 장려한다. NGO들은 보고 일정과 관련 자료 등 정보를 구하기 위해 관련 정부 부처와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13. 정부 보고서의 제출 후 위원회의 심의까지, NGO는 위원회 사무국에 어떤 형태의 정보든(신문기사 모음, NGO 소식지, 비디오테이프, 보고서, 학술지, 연구물, 공동성명서 등) 제출할 수 있다. 이 정보는 사무국이 만들어 유지하는 국가 파일에 추가될 것이다. 국가 파일들은 사무국이 모든 가능한 곳(유엔기관들, 특수기구들, 미디어, 지역 연구소, 학술지, NGO 사회 등)으로부터 얻은 정보들을 소장한다. 해당 국가 파일에 소장 중인 정보에 기반해, 사무국은 위원회를 위한 국가 소개(profile), 즉 심의될 국가 내 상황에 대한 통찰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자료를 준비한다. 이는 보고서에 국가가 제시한 정보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C. 회기 전 실무분과 활동에 NGO의 참여

14. 위원회의 회기 전 실무분과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회기 후 다음 회기를 준비하기 위해 1주일 동안 비공식으로 만난다. 오래 회기 전 실무분과는 각 회기마다 5개의 정부보고서를 검토한다. 실무분과의 각 위원들은 '국가 보고관'으로 일하는데, 5개 중 하나의 보고서에 대해 질의서를 기초하는 역할을 한다. 질의서는 해당국 정부에 대한 질문들을 포함하는데 이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들(핵심자료, 보고서, 보고서 부록)과 위원회가 NGO 등 여러 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기반해 만들어진다. 보고서를 심의하는 위원회 회기에서, 국가 보고관이 정부보고서 그리고 위원회와 정부 간의 논의에 근거해 최종 견해의 초안 작성을 책임진다.

15. 회기 전 실무분과에서, 각 국가보고관은 실무분과의 다른 위원들에게 질의서 초안을 발표한다. 실무분과는 각 초안을 논의하고, 논의 하에 5개국에 대한 질의서를 최종적으로 채택한다. 질의서는 채택 직후 제네바 유엔 대표부를 통해 보내진다. 정부는 보고서 심의 회기 전에 위원회 공식 언어들로 번역하는데 시간이 충분하도록 서면 답변을 주어야 한다. 질의서와 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웹사이트에 공개된다.(주소는 문서 마지막에)

16. 국제, 국내를 막론하고 NGO들이 회기 전 실무분과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세가지 방법이 있다.

(i) 실무분과 회의 전에 관련 정보를 해당국가 보고관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ii) 실무분과 회의 전에 관련 정보가 실무분과 전원에게 배포되도록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다.

(iii) 회기 전 실무분과 회의 첫날 오전에 NGO 대표가 구두 발표를 할 수 있다.

(i) 국가 보고관에 정보 제공

17. NGO는 질의서 초안 작성을 맡고있는 국가보고관에 직접 특정 국가에 관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때, NGO는 다음 회기 때 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될 정부 보고서 목록을 확인하려면, 사무국에 연락을 취하거나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웹사이트를 참조해야 한다. 회기 전 실무분과는 위원회의 보고서 심의 6개월에서 12개월 전 주어진 정부 보고서에 관한 질의서를 논의·확정한다.

18. 따라서 질의서 초안 작성을 책임지는 국가보고관에게 직접 정보를 제출하길 원하는 NGO는 사무국으로부터 해당 국가 보고관의 이름과 주소를 확보해야 한다. 국가보고관에게 제출하는 모든 자료의 복사본 1부를 사무국에 보내 실무분과 회의에서 회기 전 실무분과 위원들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한다.

(ii) 회기 전 실무분과에 서면 정보 제출

19. NGO는 사무국을 통해 회기 전 실무분과에 서면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는 그 국가 내에서 규약이 어떻게 이행되는지에 대해 조항별로 서술하는 보고서의 형태로 볼 수 있어야 한다. 회기 전 실무분과가 해당 정부에 대한 질의서 작성 시 고려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마지막에 구체적 질문들을 제시하면 특히 도움이 된다. 실무분과 위원들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보고서 10부(와 요약본)를 회기 전 실무분과 회의 1주일 전에 사무국에 전달해야 한다.

(iii) 회기 전 실무분과에서의 구두 발표

20. 일반적으로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리는 회기 전 실무분과 첫 회의 때 NGO들이 구두 발표를 하는 것이 장려된다. 발표 내용은 규약의 조항과 구체적으로 연관되는 것으로서, NGO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회기 전 실무분과가 해당 정부에 대한 질의서 작성 시 고려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질문을 제안해야 한

다.

D. 위원회 회기에의 NGO 참여

(i) 서면 발표문 제출

21. 경제사회이사회에 일반 혹은 특수 협의자격을 가진 NGO나 로스터 자격을 지닌 NGO는 보고 회기 시 위원회에 서면 발표문을 제출할 수 있다. 경제사회이사회에 협의자격을 없는 NGO는 협의자격을 있는 NGO의 후원을 받아 서면발표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절차는 유엔인권위원회나 인권소위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다 : 발표문의 길이는 경제사회이사회에 일반 협의자격을 있는 NGO의 경우 2천 단어 길이 이하, 특수 협의자격이나 로스터 자격이 있는 NGO의 경우 1천5백 단어 이하여야 한다. 또 발표문은 줄 간격 200%(더블스페이스)여야 한다. 위원회 사무국이 발표 예정 회기가 열리기 최소 세 달 전에 받으면, 발표문은 위원회에서 통용되는 모든 언어로 번역되고 유엔 공식 문서로 발간된다.

(ii) 보고서 제출

22. 정부 보고서 심의 회기에 맞춰, NGO는 그 나라에서 규약에 명시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상황에 관해 보완적 혹은 대안적인 설명이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병렬(parallel:반박)' 보고서의 형태로 서면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위원회에서 통용되는 모든 언어로 보고서의 요약본을 제출하는 것이 유용하다. NGO는 위원들에게 배포하기 위해 보고서 25부와 요약본을 회의 1주일 전에 사무국에 전달해야 한다. : 각 위원(18명)에게 1부 씩, 사무국에게 3부, 통역자에게 4부.

(iii) 위원회의 NGO 발언 기회 시 구두 발표

23. NGO는 각 보고 회기의 첫 날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열리는 NGO 청문 시간에 자신들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NGO 발표에 주어지는 평균 시간은 15분이다. 발표문에서, NGO는 :

정부 보고에 관한 견해를 밝힌다.

보고 절차 과정에서 정부와 NGO 간 협의 혹은 협력 유무를 나타낸다.

반박보고서의 요지를 설명한다.

해당 국가 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일반적인 상황을 드러낸다.

NGO 서면 보고서 제출 이후 획득한 새로운 정보를 밝힌다.

규약 이행에서 부딪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안한다.

규약 이행 과정에서 정부가 문제를 해결한 긍정적인 예를 알린다.

해당국 정부는 NGO 발언 내용을 전달받고, 방청자로서 발표를 들을 수 있다. 정부는 위원회의 보고 심의 시 NGO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 의견을 밝힐 기회를 갖는다.

(iv) 정부 보고 심의 방청

24. 정부 보고 심의의 일부로서 위원회는 정부 대표들과 함께 의견을 나눈다. 위원들은 정부 보고서, 핵심문서들, 질의에 대한 정부의 답변과 위원회에 제공된 기타의 정보들에 기반해 그 나라에서 규약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한다. 정부 대표와 위원회 사이

의 논의 중간에, NGO는 개입할 수 없다. 하지만 회의실에 남아 논의를 방청하는 것이 유용하다.

E. 위원회의 정부 보고서 심의 후속작업에의 NGO 참여

25. 정부 보고서의 심의 마지막에, 위원회는 해당 정부의 규약 이행 상황에 관한 위원회의 입장을 표명하는 최종견해를 채택한다. 이 최종견해는 특히 규약 비준국의 더 나은 이행(을 촉구하는)에 관한 권고를 포함한다. 최종견해는 일반적으로 위원회 회기 마지막 날 정오에 공개된다. 그 직후, 최종견해는 모든 유엔공식언어들로 번역되고 개별 문서로 발간된다. 문서는 또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최종견해는 해당 정부에 보내지고, 위원회 연례 보고에 포함된다.



**Economic and Social
Council**

Distr.
GENERAL

E/C.12/2000/6
7 July 2000

Original: ENGLISH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wenty-third (extraordinary) session
Geneva, 14 August - 1 September 2000
Item 3 of the provisional agenda

SUBSTANTIVE ISSUES ARISING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NGO participation in the activitie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Note by the secretariat

CONTENTS

	<u>Paragraphs</u>	<u>Page</u>
I. INTRODUCTION	1 - 3	3
II. NGO PARTICIPATION IN THE COMMITTEE'S CONSIDERATION OF STATE PARTY REPORTS	4 - 29	3
A. General.....	4 - 9	3
B. NGO participation following the submission of a State party's report.....	10 - 13	5
C. NGO participation in the work of the pre-sessional working group.....	14 - 20	6
D. NGO participation at the Committee session	21 - 24	7
E. NGO participation in the Committee's follow-up to consideration of State party reports.....	25 - 27	9
F. NGO participation in the Committee's consideration of the status of implementation of the Covenant in non-reporting States.....	28 - 29	9
III. NGO PARTICIPATION IN THE COMMITTEE'S DAY OF GENERAL DISCUSSION.....	30 - 31	10
IV. NGO PARTICIPATION IN COMMITTEE ACTIVITIES RELATING TO THE DRAFTING AND ADOPTION OF GENERAL COMMENTS.....	32 - 33	10
V. SOURCES OF INFORMATION	34 - 36	11
Annex. Reference documents		12

I. INTRODUCTION

1.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ttaches great importance to cooperation with al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active in the field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those in consultative status with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and those without such status. The Committee constantly encourages their participation in its activities. In an effort to secure the most effective and widest possible participation of NGOs in its activities, the Committee adopted, at its eighth session, on 12 May 1993, a document entitled "NGO participation in activitie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1993/WP.14), which explains in a concise manner the modalities of NGO participation in the Committee's work. The basic principles set out in that document have since been supplemented, as the Committee's practice evolved. These developments are reflected in the annual report of the Committee, in the chapter entitled "Overview of the present working methods of the Committee".
2. The present document serves to provide detailed guidelines for NGOs with a view to facilitating their cooperation with the Committee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national monitoring, through its examination of State party report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by States parties.
3. The main activities of the Committee that are open to NGO participation are:
 - (i) Consideration of State party reports;
 - (ii) Days of General Discussion;
 - (iii) Drafting of General Comments.

II. NGO PARTICIPATION IN THE COMMITTEE'S
CONSIDERATION OF STATE PARTY REPORTS

A. General

4. The stages in the consideration of State party reports in which NGOs can participate are the following (detailed information is provided below):
 - (i) Entry into force of the Covenant: once a State party has ratified the Covenant, national NGOs working in the field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re encouraged to establish contact with the Committee secretariat (the contact address is given at the end of the present document);
 - (ii) From the receipt of a State party's report until its consideration: submission of any relevant information (placed in country files established and maintained by the secretariat);

- (iii) Pre-sessional working group: submission of information directly to the member of the Committee responsible for drafting the list of issues (with copy to the secretariat) and/or submission of written information to the secretariat and/or oral presentations before the pre-sessional working group;
- (iv) Session at which a State party's report is scheduled for consideration: submission to the secretariat of a written statement and/or of information in the form of a report, and/or oral presentations before the Committee,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mmittee's "NGO hearings"; observing the Committee's dialogue with the State party delegation;
- (v) Follow-up to the Committee's concluding observations: submission of information to the secretaria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in the State party concerned.

5. It is important that all information submitted to the Committee is: (a) specific to the Covenant; (b) relevant to the matters under consideration by the Committee or its pre-sessional working group; (c) based on documentary sources and properly referenced; (d) concise and succinct; and (e) reliable and not abusive. NGOs can submit information relating to all the articles of the Covenant, in which case it is useful to follow the "Revised general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s 16 and 17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1991/1), which are intended to assist States parties in the drafting of their reports. This lends itself to a parallel report format that resembles the structure of the official report and facilitates the members' comparative review of the parallel information. NGOs may also provide information on some articles or just one article.

6. It is recommended that national NGOs collaborate, coordinate and consult when submitting information to the Committee. It is worthwhile, whenever possible, to produce a single consolidated submission representing a broad consensus by a number of NGOs. That could be accompanied by shorter, more targeted and detailed submissions by individual NGOs on their own priority areas. This kind of coordinated activity will help the secretariat and the Committee members to obtain a clearer picture of the current status of implementation of the Covenant in a given State party. Most importantly from the NGO perspective, joint submissions also eliminate the possibility of duplication and contradictions in the NGO information presented. The former creates inefficiency and increases the burden on Committee members, and the latter can undermine the credibility of the NGO submissions. Both duplicative and contradictory information from NGOs can weaken the NGOs' position and arguments. On the other hand, consistency and accuracy, as well as demonstrated coordination, enhance the professionalism of presentations, increase credibility and ensure the NGOs' intended outcome.

7. NGOs wishing to attend the sessions of the Committee, the pre-sessional working group meetings or the Committee's NGO hearings should request accreditation from the secretariat in advance. Identity photo-badges valid for the duration of the session may be obtained by all delegations from the 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UNOG) Security and Safety Section at the Villa "Les Feuillantines", 13, avenue de la Paix, Geneva, between 8 a.m. and 2.30 p.m., Monday to Friday, upon presentation of a letter of accreditation and an identity document.

NGOs wishing to speak should also indicate whether they require audio-visual equipment. This will help the secretariat to plan related activities, and to ensure that all participants have adequate time and equipment for their interventions. The average speaking time allotted to any one NGO is 15 minutes, although the speaking time varies in function of the number of NGOs wishing to speak.

8. The working languages of the Committee are English, French, Spanish and Russian. A document provided in English will reach the widest audience. However, the financial means of the NGO permitting, it is useful to submit at least a summary of the information in the working languages of the Committee other than the language of submission of the document.

9. Prior to and during the session, the secretariat provides the Government concerned with a copy of all written information provided to the Committee by NGOs, through the country's Permanent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B. NGO participation following the submission of a State party's report

10. When a State ratifies the Covenant, it commits itself to reporting regularly (the initial report is due two year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venant and periodic reports are due at five-year intervals thereafter) to the Committee on measures it has taken towards the realization of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nshrined in the Covenant, including efforts undertaken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Reports prepared by the State party should conform to the revised general guidelines referred to in paragraph 5 above.

11. The process leading to the consideration of a State party's report by the Committee begins when the State party submits its report to the secretariat. Once the secretariat has received the report, it sends it for translation into the six official languages of the United Nations (English, French, Spanish, Russian, Arabic and Chinese). The report is issued as a United Nations document only when all language versions are ready, which may take up to 12 months. In the meantime, the secretariat of the Committee establishes a list of national NGOs working in the field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contacts these NGOs in writing to solicit information from them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venant in the country in question. Relevant documents (core document, State party report, list of issues, revised general guidelines, guidelines on NGO participation) are enclosed with the letter sent to NGOs. National NGOs interested in cooperating with the Committee are encouraged to contact the secretariat once the Covenant has entered into force for their country. This will assist the secretariat at a later stage, when it seeks to solicit information from national NGOs regarding a State party's report.

12. The Committee also encourages Governments to consult with NGOs and civil society in general on matters concerning the Covenant's implementation, including the reporting process. NGOs may find it opportune to contact the relevant government ministry for information, including reporting dates and related documents.

13. Following the submission of a State party's report and until its consideration by the Committee, NGOs can submit any type of information to the secretariat of the Committee (press clippings, NGO newsletters, video tapes, reports, academic publications, studies, joint

statements etc). This information will be included in the country file established and maintained within the secretariat. The country files contain information obtained by the secretariat from all available sources (United Nations organs, specialized agencies, the media, regional institutions, academic publications, the NGO community, etc.). On the basis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relevant country file, the secretariat prepares for the Committee a country profile, a working document which attempts to provide insights into the situation in the State to be examined, to complement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State party in its report.

C. NGO participation in the work of the pre-sessional working group

14. A pre-sessional working group of the Committee, composed of five of its members, meets in private after each Committee session for a week to prepare for the next session. Typically, the pre-sessional working group considers five State party reports at each of its sessions. Each member of the group serves as a "country rapporteur", with the task of drafting a list of issues concerning one of the five reports. A list of issues contains questions addressed to the State party, formulated on the basis of the documents submitted by the State party (core document, report, annexes to the report) and on information made available to the Committee from all other sources, including NGOs. At the session of the Committee at which the report is considered, the country rapporteur is also responsible for drafting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basis of the State party's report and the dialogue between the Committee and the State party.

15. In the pre-sessional working group, each country rapporteur presents his or her draft list of issues to the other members of the group. The working group discusses each draft, and adopts a final list of issues for each of the five countries under discussion. The list of issues is made available to the State party immediately after its adoption, through its Permanent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The State party is requested to provide written replies to the list of issues well in advance of the session at which its report is scheduled for consideration, in order to allow sufficient time for their translation into all the working languages of the Committee. The lists and the replies to the lists are also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on the Web site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address at the end of the document).

16. There are three possibilities for NGOs, international or national, to contribute to the work of the pre-sessional working group:

- (i) Prior to the meeting of the working group, relevant information may be submitted directly to the country rapporteur concerned;
- (ii) Prior to the meeting of the working group, relevant information may be submitted to the secretariat for distribution to the full working group;
- (iii) Oral statements may be made by NGO representatives in person during the first morning of the pre-sessional working group meeting.

1. Submission of information to country rapporteurs

17. NGOs can submit relevant information on a particular country directly to the country rapporteur responsible for drafting the list of issues. In this event, the NGO should contact the secretariat or consult the OHCHR Web site for a list of the State party reports that are pending consideration by the Committee at its future sessions. The pre-sessional working group discusses and adopts the list of issues regarding a given State party report 6 to 12 months prior to the consideration of the report by the Committee.

18. Accordingly, an NGO wishing to submit information on a State party directly to the country rapporteur responsible for drafting the list of issues should obtain from the secretariat the name and address of the country rapporteur concerned. It is recommended that a copy of any document that the NGO submits to the country rapporteur be also sent to the secretariat for distribution to other pre-sessional working group members at the working group meeting.

2. Submission of written information to the pre-sessional working group

19. NGOs may also submit written information to the pre-sessional working group, through the secretariat. This information should be made available in the form of a report discuss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venant in the State party on an article-by-article basis. It is particularly helpful to formulate, at the end of each section specific questions which the pre-sessional working group may consider incorporating in the list of issues with respect to the State party concerned. Ten copies of the report (and a summary) should be delivered to the secretariat one week before the pre-sessional working group meets, for distribution to its members.

3. Oral statement to the pre-sessional working group

20. NGOs are also encouraged to make an oral presentation at the first meeting of the pre-sessional working group, which is usually held on a Monday from 10.30 a.m. to 1 p.m. The statement should be specific to the articles of the Covenant, focusing on the most pressing issues from the NGO perspective and providing suggestions for specific questions that the pre-sessional working group may consider incorporating in the list of issues with respect to the State party concerned.

D. NGO participation at the Committee session

1. Submission of a written statement

21. NGOs in general or special consultative status with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r on the Roster¹ may submit a written statement to the Committee at the reporting session.

¹ General consultative status is assigned to NGOs with broad interest in most Economic and Social Council activities. Special consultative status is assigned to NGOs with interest in special spheres of Council activities. NGOs in the position to make occasional and useful contributions to the work of the Council or its subsidiary bodies or other United Nations bodies within their competence, may be placed on the Roster.

An NGO without consultative status with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may submit a written statement provided that it is sponsored by an NGO in consultative status with the Council. The procedure is identical to that used at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the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statement should be no more than 2,000 words long for NGOs in general consultative status with ECOSOC and no longer than 1,500 words for NGOs in special consultative status and on the Roster, and it should be double spaced. It will be translated into all the working languages of the Committee and issued as a United Nations document if the secretariat of the Committee receives it no later than three months in advance of the session for which the statement is intended.

2. Submission of a report

22. For the session at which a given State party's report is scheduled for consideration, NGOs can submit written information in the form of a "parallel" report, providing a supplementary or alternative interpretation, or second opinion, concerning the status of implementation of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nshrined in the Covenant in that country. Where possible, it is useful to submit a summary of the report in all the working languages of the Committee. NGOs should deliver 25 copies of their report and summary to the secretariat a week prior to the session for distribution to Committee members: one for each member (18), three for the secretariat and four for the interpreters.

3. Oral statement at the Committee's NGO hearings

23. NGOs can also voice their concerns during the NGO hearings which take place on the first day of each reporting session, from 3 p.m. to 6 p.m. The average time limit for NGO statements is 15 minutes. In their statements, NGOs are invited to:

State their opinion about the government report;

Indicate whether or not there was any domestic government/NGO consultation or cooperation through the reporting process;

Discuss the main critical points of the parallel report;

Identify prevailing trends relevant to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the country;

Present any new information that has become available since the NGO written report was submitted;

Propose solutions to problems encounter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venant;

Report any positive examples of problem-solving by the Government in implementing the Covenant.

States parties concerned are informed of the NGO hearings and are invited to attend hearings as observers. States parties will have an opportunity to comment on the statements made by NGOs during the Committee's consideration of their report.

4. Conserving the consideration of State party reports

24. As part of the consideration of a State party report, the Committee engages in a dialogue with the government delegation. Committee members pose quest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venant in the country, based on the State party report, the core document, the replies provided by the State party to the list of issues, and any additional information submitted to the Committee. During the dialogue between the State party delegation and the Committee, NGOs cannot intervene, but it is useful for them to remain in the conference room to observe the dialogue.

E. NGO participation in the Committee's follow-up to consideration of State party reports

25. At the end of its consideration of a State party report, the Committee adopts concluding observations which reflect the Committee's position with respect to the status of implementation of the Covenant by the Government concerned. The concluding observations contain, *inter alia*, recommendations regarding the further implementation by the State party of the Covenant. The concluding observations are made public, usually on the last day of the Committee session at noon. Soon thereafter, they are translated into and issued in all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United Nations as a separate document. They are also placed on the OHCHR Web site. The concluding observations are made available to the State party concerned and are included in the annual report of the Committee.

26. The role of NGOs is crucial after the Committee issues its concluding observations. They can assist by providing the Committee with reports on follow-up measures taken by the Government in response to the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the concluding observations. NGOs can give publicity to the concluding observations locally and nationally, and monitor the Government's performance in implementing the Committee's recommendations. NGOs reporting back to the Committee on the basis of their local monitoring and awareness-raising activities would contribute to more effective follow-up on the part of the Committee by keeping the Committee informed of developments in the country after the consideration of the State party report.

27. It would also be useful for local and national NGOs actively involved in the monitoring activities of the Committee to prepare a document on their experiences and on the working methods of the Committee, with comments, advice for other NGO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the system. Such a document, if distributed widely within the country and sent to the secretariat of the Committee, would serve as a tool for awareness-raising, and would assist the Committee and the secretariat in improving their performance.

F. NGO participation in the Committee's consideration of the status of implementation of the Covenant in non-reporting States

28. In situations where an initial State party report is significantly overdue, the Committee applies a procedure of reviewing the situ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implementation of the Covenant with respect to that State party. The Committee notifies the State party of its intention to consider the statu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the territory under its jurisdiction

at a specified future session, and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submit its report as soon as possible. In the absence of a report, the Committee proceeds with the consideration as scheduled, on the basis of all information available to it.

29. In such cases, information provided by NGOs becomes especially valuable to the Committee, in view of the absence of materials from the State party. Thus, any relevant information is welcomed, and the most useful way to intervene is to submit a report discussing article by articl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venant by the State party. In addition,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NGOs participate in the Committee's NGO hearings and provide information orally regarding the situation in the country under review. Information regarding the review by the Committee of the status of implementation of the Covenant in States whose reports are long overdue is available on the OHCHR Web site or from the secretariat.

III. NGO PARTICIPATION IN THE COMMITTEE'S DAY OF GENERAL DISCUSSION

30. At each session, the Committee devotes one day, usually the Monday of the third week of the session, to general discussion of a particular right or of a particular aspect of the Covenant. The purpose is twofold: (i) to assist the Committee in developing in greater depth its understanding of the relevant issues; and (ii) to enable the Committee to encourage inputs into its work from all interested parties.

31. NGOs specialized in the topic scheduled to be addressed by the Committee during its Day of General Discussion can participate in two ways. First, they can provide the Committee with a background document, which should be submitted to the secretariat no later than three months in advance of the session at which the Day of General Discussion is scheduled to take place. The document, which should not be more than 15 double-spaced pages in length, will be translated into all the working languages of the Committee and issued as a United Nations document. Second, specialized NGOs can send their experts to participate in the Day of General Discussion. Information on the topics for discussion at future Days of General Discussion can be obtained from the secretariat.

IV. NGO PARTICIPATION IN COMMITTEE ACTIVITIES RELATING TO THE DRAFTING AND ADOPTION OF GENERAL COMMENTS

32. The Committee endeavours, through its General Comments, to make available for the benefit of all States parties the experience gained continuously through the examination of State party reports. General Comments provide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the rights contained in the Covenant and States parties' obligations and assist and promote the further implementation of the Covenant by providing guidance to States parties on practical ways and mean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specific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14 General Comments adopted by the Committee as of 1 June 2000 are listed in the annex to the present document. The texts of the General Comments may be found, in English, French and Spanish, on the OHCHR Web site. Information regarding the scheduled discussion and adoption of General Comments can be obtained from the secretariat.

33. During the stages of the drafting and discussion of a General Comment, specialized NGOs can address the Committee in writing. During discussions, NGOs can make short oral statements on specific points of the draft general comment. It is preferred that any recommendations as to the text of a draft general comment be presented also in written form (and on electronic diskette) for ease of eventual incorporation in the document.

V. SOURCES OF INFORMATION

34. Information on State reporting and the Committee's sessions is available on the OHCHR Web site at: www.unhchr.ch/html/menu2/6/cescr.htm (Starting from the OHCHR homepage www.unhchr.ch: click on OHCHR PROGRAMME; click on CONVENTIONAL MECHANISMS; click o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35. On-line versions of documents of the Committee, information on ratifications, status of reporting and the membership of the Committee are available at <http://www.unhchr.ch/tbs/doc.nsf> (Starting from the homepage www.unhchr.ch, click on DOCUMENTS; click on TREATY BODIES DATABASE.)

36. Further information is available from the secretariat of the Committee at the following address:

Alexandre Tikhonov
Secretary to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ffice 1-025, Palais Wilson
Palais des Nations
8-14 Avenue de la Paix
1211 Geneva 10
Switzerland
Tel. (41 22) 917 9321
Fax. (41 22) 917 9046/9022
E-mail: atikhonov.hchr@unog.ch

Annex

REFERENCE DOCUMENTS

Fact Sheet No. 16/Rev.1

Contain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information on the working methods of the Committee.

<http://www.unhchr.ch/html/menu6/2/fs16.htm>

(Starting from the homepage www.unhchr.ch: click on PUBLICATIONS.)

“NGO participation in activitie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1993/WP.14)

<http://www.unhchr.ch/tbs/doc.nsf>

(Starting from the homepage www.unhchr.ch: click on DOCUMENTS; click on TREATY BODIES DATABASE; click on DOCUMENTS; click on BY TREATY; click o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lick on OTHER TREATY-RELATED DOCUMENT.)

“Revised general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s of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s 16 and 17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1991/1)

<http://www.unhchr.ch/tbs/doc.nsf>

(Starting from the homepage www.unhchr.ch: click on DOCUMENTS; click on TREATY BODIES DATABASE; click on DOCUMENTS; click on BY TREATY; click o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lick on BASIC REFERENCE DOCUMENT.)

“Preparation of the initial parts of State party reports ‘core documents’ under the various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HRI/CORE/1*)

“Status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reservations, withdrawals, declarations and objections under the Covenant” (E/C.12/1993/3/Rev.4)

<http://www.unhchr.ch/tbs/doc.nsf>

(Starting from the homepage www.unhchr.ch: click on DOCUMENTS; click on TREATY BODIES DATABASE; click on DOCUMENTS; click on BY TREATY; click o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lick on BASIC REFERENCE DOCUMENT.)

“Selected bibliography of published material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the work of the Committee” (E/C.12/1989/L.3/Rev.2)
(Starting from the homepage www.unhchr.ch: click on DOCUMENTS; click on TREATY BODIES DATABASE; click on DOCUMENTS; click on BY TREATY; click o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lick on OTHER TREATY-RELATED DOCUMENT.)

General Comments

No. 1 (1989) on reporting by States parties

No. 2 (1990) on international technical assistance measures

No. 3 (1990) on the nature of States parties' obligations

No. 4 (1991)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No. 5 (1994)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No. 6 (1995) on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older persons

No. 7 (1997)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art. 11, para. 1, of the Covenant): forced evictions

No. 8 (1997)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sanctions and respect fo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No. 9 (1998) on domestic application of the Covenant

No. 10 (1998) on the rol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the protec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No. 11 (1999) on plans of action for primary education

No. 12 (1999) on the right to adequate food

No. 13 (1999) on the right to education

No. 14 (2000) on the right to health

<http://www.unhchr.ch/tbs/doc.nsf>

(Starting from the homepage www.unhchr.ch: click on DOCUMENTS; click on TREATY BODIES DATABASE; click on DOCUMENTS; click on BY TREATY; click o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lick on GENERAL COMMENTS.)

Annual reports of the Committee

Report on the first session, 9-27 March 1987 (E/1987/28)

Report on the second session, 8-25 February 1988 (E/1988/14)

Report on the third session, 6-24 February 1989 (E/1989/22)

Report on the fourth session, 15 January-2 February 1990 (E/1990/23)

Report on the fifth session, 26 November-14 December 1990 (E/1991/23)

Report on the sixth session, 25 November-13 December 1991 (E/1992/23)

Report on the seventh session, 23 November-11 December 1992 (E/1993/22)

Report on the eighth and ninth sessions, 10-28 May 1993, 22 November-10 December 1993
(E/1994/23)

Report on the tenth and eleventh sessions, 2-20 May, 21 November-9 December 1994
(E/1995/22)

Report on the twelfth and thirteenth sessions, 1-19 May 1995, 20 November-8 December 1995
(E/1996/22)

Report on the fourteenth and fifteenth sessions, 30 April-17 May 1996,
18 November-6 December 1996 (E/1997/22)

Report on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sessions, 28 April-16 May 1997,
17 November-5 December 1997 (E/1998/22)

Report on the eighteenth and nineteenth sessions, 27 April-15 May 1998,
16 November-4 December 1998 (E/1999/22)

Report on the twentieth and twenty-first sessions, 26 April-14 May 1999,
15 November-3 December 1999 (E/2000/22)

<http://www.unhchr.ch/tbs/doc.nsf>

(Starting from the homepage www.unhchr.ch: click on DOCUMENTS; click on TREATY BODIES DATABASE; click on DOCUMENTS; click on BY TREATY; click o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lick on SESSIONAL/ANNUAL REPORT OF COMMITTEE.)

The Web site contains the annual reports starting from that of the tenth and eleventh sessions.

약식보고서 (한글, 영문/ 2000년 8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사회단체 약식 보고서

UN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 제출
2000. 8.

작성 및 제출 :

녹색연합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료연합
사회진보연대
산업재해추방운동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동의 서명 :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서문

1999년 6월 한국정부는 사회권 규약 제 16 조 및 17 조의 규정에 따른 제 2 차 정부보고서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정부보고서는 그 내용에 있어 한국의 열악한 사회권 현실을 충분히 반영치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작성과 제출절차에 있어서도 잘못된 점이 많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한국정부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원회의 올바른 이해와 검토를 돕고자 작성된 것이다. 한국의 사회단체들은 귀 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질의할 때 한국의 사회권 현실에 대한 우리의 주요 관심 사안들이 반영되기를 희망한다.

작성에 참여한 한국의 16 개 민간단체는 다음과 같다: 녹색연합,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중의료연합, 사회진보연대, 산업재해추방운동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도시문제연구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그리고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가 동의 연서했다.

문의 연락처

◆ 김기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Tel. (+82 2) 522 7284 Fax. (+82 2) 522 7285
E-Mail m321@chollian.net

◆ 이주영

인권운동사랑방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2가 8-29 4층
Tel. (+82 2) 741 5363 Fax. (+82 2) 741 5364
E-Mail jylee0530@orgio.net, rights@chollian.net

■ 목 차 ■

서문 (p2)

제 1 장. 정부보고서에 대한 전체적평가 (p4)

제 2 장. 규약이행에 있어서의 장애요소 (p5)

제 3 장. 규약의 국내법상 지위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실현 (p6)

제 4 장. 노동권, 노동조건(6, 7 조) (p8)

제 5 장. 비정규노동자(6, 7, 8 조) (p9)

제 6 장. 산업보건(7 조) (p11)

제 7 장. 노동 3 권(8 조) (p13)

제 8 장. 이주노동자(6, 7, 8, 10, 13 조) (p15)

제 9 장. 사회보장(9 조) (p18)

제 10 장. 여성의 보호(10 조) (p20)

제 11 장. 아동의 보호(10 조) (p24)

제 12 장. 장애인의 권리(6, 7, 10, 13 조) (p27)

제 13 장. 주거권(11 조) (p30)

제 14 장. 건강권(12 조) (p32)

제 15 장. 환경권(12 조) (p35)

제 16 장. 교육의 권리: 초, 중등교육(13, 14 조) (p37)

제 17 장. 교육의 권리: 고등교육(13 조) (p39)

제 18 장. 문화적 권리(15 조) (p41)

제 1 장. 정부보고서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1. 대한민국은 90년대 중반까지 놀라운 경제성장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 97-98년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한국의 경제개발은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개발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로 경제위기의 고통은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 및 빈곤층에게 지워졌다. 더구나 IMF 구제금융 지원의 조건으로 부과된 각종 구조조정 조치는 계층 간의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규약의 이행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처럼 조약의 의무 이행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어려움에 대해 보고서에서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는 가입국의 보고의무에 대한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1의 8항에서 밝히고 있는 보고의 목적 — 가입국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와 어려움”에 대해 자세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 — 에 부합하지 않는다.
3.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는 보고서에 97년 이후 사회경제문화적 권리의 실현이 불균등해지는 상황을 상세히 기술하지 않고 있어 의도적으로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게 한다. 이를테면 실업률, 여성 고용 현황, 소득분배 현황, 산업재해발생률 등 사회경제적 권리 실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들이 정부보고서에는 96년 혹은 97년도까지만 제시되어 있다. 보고의 목적 중 하나는 “가입국이 각 권리들에 관한 실제 상황을 정기적으로 체크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권리들을 향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하는데” 있기도 하다(일반논평 1의 3항).
4. 보고의 또 다른 목적은, 규약에서 명시한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해 면밀히 검토된 정책들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알리고(일반논평 1의 4항), 그 진전 정도를 보여주는 정보를 정기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권고(일반논평 1의 7항)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보고서는 정부가 채택한 정책 및 법률을 나열하고 있을 뿐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시행 결과 어떠한 진전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 더러 평가용으로 제시된 일부 자료들조차도 국제 수준과의 비교가 불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한편, 경제사회적 권리 실현에 역행하는 조치들, 예를 들어 정리해고제의 도입, 산업안전규제의 완화, 파견근로제의 도입, 미구잡이식 개발, 공공의료기관의 민영화, 환경규제의 완화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5. 정부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비준과 효력 발생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보고서의 작성 과정이나 제출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이는 95년 최초 보고서 심의에서도 한국의 민간단체들이 지적했던 내용이다. 이번에도 한국의 민간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99년 6월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두어 달이 지난 후에야 위원회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이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정부 정책에 대해 공공의 감사가 이뤄지도록 돕고, 관련 정책을 입안시행평가하는데 다양한 사회부문의 참여를 장려”하고자 하는 보고의 목적(일반논평 1의 5항)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6. 결론적으로, 정부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의 노력만을 선전하고 있을 뿐 지난 5년 간 대한민국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실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장애 요소들을 제거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자는 보고절차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는 평가한다. 이는 “가입국의 보고가 단순히 국제감독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절차에 그쳐서는 안된다(일반논평 1의 1항)”는 위원회의 견해도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제 2 장. 규약이행에 있어서의 장애요소

1. 외환위기와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

1997년부터 시작된 외환위기와 그로 인한 국가경제 전반의 불황이, 국민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키고 사회문화적 권리 보장의 후퇴를 가져왔다. 외환위기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봉쇄하고 금융시장의 강제적 개방과 외국기업의 자산소유를 자유화하는데 집중되었고, IMF가 구제금융의 대가로 요구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미시적 생활영역 다방면에 걸쳐서 예기치 않은 피해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노동자빈민 등의 생존권 요구가 국가적 위기상황이라는 이유로 무시되었고, 복지교육환경을 위한 정책들은 위기 타개를 위한 경제회생 정책들로 대체되어 버렸다.

2.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빈부격차의 심화

IMF의 「한국 보고서」를 위시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된 한국경제 위기에 대한 해석은 위기의 주요인을 국가개입주의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 논리적 결과로서 위기에 대한 처방도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제시하였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으로 사회전반에서 ‘시장의 역할을 과도하게 강조하게 되었고, 정부의 공공적 역할을 부정하는 ‘작은 정부론’이 대세를 이루었다.

그리하여 실업은 증가하고 노동기치 및 임금이 하락하였으며, 생계비 급등으로 빈곤이 심화되고 부의 편파적 집중으로 빈부격차가 커졌다. 통계청이 집계한 1998년 도시근로자 소득통계에 따르면 소득 상위자 10%의 소득은 IMF이전에 비해 4% 증가한데 비해 하위 20%는 -17.2%로, 아래로 내려갈 수록 감소폭이 증가하였다.

가계소득 감소와 사회보장의 축소를 대체하기 위해서 가족에 대한 여성의 부담이 커지고 아동의 인권 및 복지가 축소되었으며, 사상최초로 교육재정이 축소되기에 이르렀다.

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동시에 오염물질 배출, 자원파괴에 대해서 사회적 통제가 약화되며 아울러 빈곤층의

환경규범이 약화되어 환경파괴가 가속화되고, 구조조정 정책에는 경제개혁정책에 따른 환경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파괴가 가속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보건의료부문의 정부지출 축소와 수입의약품 가격의 상승, 사용자 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보건·위생·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이 약화되었다.

3. 분단과 국방비의 과다한 지출, 그리고 국가보안법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한국은 밖으로는 탈냉전의 언어를 사용하고 안으로는 냉전의 공포를 강조하는 이율배반적 상황을 체험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은 인권외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대외적으로는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남북 대치상황이라는 한국적 특수성을 이유로 국내 인권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게 된다.

또한 분단 상황이 국가예산의 많은 부분을 국방비에 지출하게 하여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국방예산의 비중은 96년 20.8%, 97년 20.7%, 98년 18.3%, 99년 16.4%를 차지하고 있어, 사회개발 및 복지에 투입되어야 할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

분단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은 그것의 적용과 집행이 극히 자의적이어서 인권의 기본규범을 무시하고 자유를 탄압하는 수단이 되고 있으며, 여전히 사회권 영역에서 노동운동·사회운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제 3장. 규약의 국내법상 지위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실현

1. 지난 수년간 관찰해온 사회권규약을 포함하여 한국정부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법적 지위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지난 1997년 자유권규약에 따라 제출한 정부보고서에서 “규약에 가입하기 전에 제정된 국내법이 규약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규약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의 어떤 법률도 규약상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만일 그런 법률이 있다면 위헌이라고 평가될 것이다”라고 기술하였다(COPR/C114/Add.1. Para.9). 또한 자유권규약에 따른 제 1차 정부보고서 검토회의가 열렸던 1992년, 한국정부의 대표는 규약의 국내법에 대한 우월을 명백히 확인하였다(COPR/CSR para.8).

그러나, 한국정부는 1996년 고문방지조약에 따라 제출한 최초정부보고서에서 “조약과 국내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신법우선의 원칙과 특별법우선원칙이 적용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CATC/32/Add.1. para.20).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제 1차 한국정부보고서 검토회의가 열린 1995년 5월 2일자 정부의 답변에서도 발견된다. 당시 한국정부는 “규약과 국내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법의 일반원칙, 예컨대 신법우선의 원칙이나 특별법우선원칙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태도는 규약가입 이후에 제정된 국내법이 어떤 경우에는 규약에 우선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낸다. 그런 의구심 때문에 사회권규약위원회는 1차 정부보고서의 검토결과를 발표하면서 규약의 국내법에서의 지위에 대하여 의구심을 표명하였고, 한국의 경우는 조약과 국내법 사이에 이를 일치시킬 수 있는 어떤 담보장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려를 표시하였다(EC.12/1995/3, para.7).

2. 한국정부는 제 1차 정부보고서 검토회의에서 현재의 헌법체제 하에서는 규약을 이행하기 위한 특별한 국내법 제정 절차가 필요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것은 규약상의 권리가 특별한 국내법적 절차 없이도 이행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우리들로서는 규약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우 현실적으로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이유로 규약 가입국들은 규약상 의무의 국내적 이행을 위하여 국내입법을 제정하는 데에 적극적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한국정부가 규약에 가입한 이래 규약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얼마나 진지하게 국내입법을 제정하려고 했는지 궁금하다.

3. 규약이 국내에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규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충분한 홍보와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국제인권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은 아직 태동단계에 불과하다. 각급학교나 교육기관에서 국제인권법은 아직 정식과목으로 채택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정부보고서는 사법연수원에서 국제인권법이 정식 과목으로 채택되어 충실히 강의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Report, para.6), 인권단체의 보고에 의하면 97년 이후 최근까지 소수의 연수생만이 이 강의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사법연수원이 국제인권법을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 과목으로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 질문사항

- (1) 규약과 국내법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인가?
- (2) 규약가입 이후 국내법이 제정되었다면 어떤 것이 우월한가? 한국정부는 규약과 국내법이 충돌하는 경우, 법의 일반원칙인 신법우선의 원칙과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는 규약가입 후 만들어진 국내법이 규약에 우선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 (3) 규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특별한 입법조치가 필요 없다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상기하면서, ① 이러한 입장은 규약의 모든 규정이 자기집행적이며 한국의 사법부에 의해 직접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②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한국정부는 1990년 규약 가입이후 규약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 왔는가?
- (4) 국제인권법을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특히 법집행관에 대한 국제인권법의 교육은 어떻게 실시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사법연수원에서 국제인권법을 필수과목으로 교육할 계획은 없는가?

제 4 장 노동권, 노동조건 (6,7 조)

1. 노동시간의 단축문제

한국에서의 현재 법정근로시간은 주당 44 시간이지만 IMF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공장가동률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단축되었던 실 근로시간은 1999 년경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됨에 따라 다시 증가하였다. 1999 년 연평균 노동시간은 월 208.1 시간으로 전년에 비해 4.5%(8.9 시간) 증가하였고, 1999 년도 ILO 노동통계연감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노동시간은 주당 50.0 시간으로서 ILO 회원국 중에서 7 번째로 길고 OECD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 노동자들의 연합단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주 40 시간(5 일) 근로제의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 질의사항

(1) 정부는 주 40 시간(5 일) 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해 어떠한 일정과 방법을 예정하고 있는가?

2.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업

한국 정부는 IMF 사태 이후 계속적으로 정리해고 위주의 구조조정을 진행해 오고 있다. 그로 인하여 전국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상실했다. IMF 는 매우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였고 한국정부는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경제위기의 원인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였다. 경제위기를 초래한 주된 원인이 재벌경영과 관치금융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혁은 미온적으로 진행하면서 오로지 노동자의 정리해고를 통한 비용절감만을 구조조정의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그 결과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었고,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하여 이들은 노숙자로 전락하였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상태를 비관하여 자살하는 사태까지 빈번하게 발생했다.

▶ 질의사항

- (1) 정부는 IMF 의 정리해고 위주의 구조조정 요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이를 수용하고 있는가?
(2) IMF 경제위기 이후 전국의 사업장에서 정리해고된 노동자는 모두 몇 명이나 되고, 노숙자로 전락한 사람 및 비관자 살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가

3. 소득격차의 심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사무직과 생산직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연봉제 및 성과급제가 급증하여 노동자집단 내의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1999 년의 경우 사업체 규모별 임금상승률은 500 인 이상 사업장이 14.4%(월 2,019,000 원)로 가장 높았고 10-29 인 사업장이 9.6%(월 1,376,000 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500 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10.29 인 사업장의 그것과 비교하여 보면 1997 년 1.38 배, 1998 년 1.41 배, 1999 년 1.47 배로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사무직 가구주의 월평균 근로소득과 생산직 가구주의 월평균 근로소득을 비교하여 보면 1995 년 1.52:1, 1996 년 1.57:1, 1997 년 1.56:1, 1998 년 1.63:1(1,891,000 원, 1,163,000 원), 1999 년 1.70:1(2,006,000 원, 1,177,000 원)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

▶ 질의사항

(1) 정부는 심화되는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가?

제 5 장. 비정규노동자(6,7,8,조)

1. 노동관계법 개정의 필요성

현재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권 신장을 위해, 노동조합 및 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 정기국회 때 제출할 입법요구안 마련이 한창이다. 입법요구안의 골자는 기간제고용에 대한 규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범위의 확대, 노동관계법의 보호의 확대 등이다. 또한 사용자중속관계와 고용관계의 분리로 인한 이중착취와 노동3권의 박탈을 야기하고 있는 다양한 간접고용형태들을 규제하기 위해, 파견법 자체를 철폐하고 직업안정법을 강화하여 고용정책상에 직접고용과 상시고용의 원칙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정규 고용형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노동조합 및 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질의사항

- (1) 정부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권 신장을 위해 노동관계법을 개정할 용의가 있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개정의 방향과 일정은 어떠한가?
(2) 정부는 고용정책상에 직접고용과 상시고용 원칙을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파견법을 철폐할 용의가 있는가?

2. 비정규직 확산에 대한 정부의 단일한 인식

IMF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기조하에서 추진된 구조조정의 결과 한국의 고용구조는 대단히 취약해졌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00년 3월 현재 임시 일용직의 규모는 전체 임금노동자 1300만여명 중 52.6%를 차지, 680여만명이 넘는다.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 고용형태의 노동자 수까지 합친다면 전체 비정규직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진다.

이렇듯 비정규직의 확산이 전체 노동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보고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인식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정부는 98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을 예로 들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규제완화에 더불어 파견법 시행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가 앞장서서 비정규직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인식은 세계적인 추세에 분명히 역행하는 것이다.

지난 1995년 ILO 전문가위원회는 영국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소견서에서, 비록 영국정부가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통하여 실업률을 감소시킨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정책이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을 저하를 초래하는 임시직 또는 시간제근로자의 확대를 촉진하는 노동유연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데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ILO 전문가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실업률의 감소라는 완전고용의 목적을 추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얻을 기회 및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사용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에 의한 고용을 촉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OECD 국가들에서는 비정규직의 증대가 심각한 사회적 의제로 대두되면서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 결과 더 이상 비정규직의 규모가 늘어나지 않거나 증가 추세가 완만해지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적은 OECD 국가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비정규직 고용 센서스 조사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비정규직 규모가 정규직의 절반을 넘어선 시점에서도 이러한 정책적 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 질의사항

- (1) 정부는 비정규직의 확산이 야기하는 사회적·정치적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정책상에 어떠한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가?
- (2) 정부는 비정규직 실태 파악을 위한 정기적 센서스 조사를 할 용의가 있는가?

3. 건실한 고용구조 정착을 마련해나가야 할 정부의 책임 방안

정부보고서에 의하면 IMF 경제위기 이후 구조적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안정을 이루기 위해 고용보험상의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직업알선사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의 실용성은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다. 현재 공공직업안정기관을 통한 취업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의하면 비정규직의 경우 공공직업알선 기관을 통한 취업은 전체의 3%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에 의한 고용안정 노력 없이 정리해고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져왔으며, 파견법의 시행에서 볼 수 있듯이 중간취위의 우려 때문에 직업안정법상 금지하고 있는 민간직업알선사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건실한 고용구조의 정착과 고용안정을 이루어야 할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명확히 방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질의사항

- (1) 정부는 고용보험상의 고용유지 지원제도와 공공취업알선사업의 실질화를 위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2) 정부는 민간취업알선업체에 의한 중간취위 문제에 대해 어떠한 실효성있는 예방조치를 취할 계획인가?

4.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 방안

비정규직노동자들은 근로조건상의 저임금, 임금체불, 차별대우, 부당해고 등 열악한 상황에 방치되어 있다. 또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노동법에 의한 최소한의 보호조치 받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으로 단결할 최소한의 권리마저도 누리지 못하는 등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98. 12. 31일 기준) 자료에 의하면, 2000년 현재 850여명의 근로감독관이 감독해야 할 사업체 수는 100만개소를 넘고 있으며 대상 근로자 수는 800만이 넘는다. 이러한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근로감독을 통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고용형태에 의해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겪는 차별과 부당노동행위를 실질적으로 금지해나가는 불가능하다.

▶ 질의사항

- (1) 정부는 현행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효성있게 적용되기 위해 근로감독 기능을 강화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제 6 장. 산업보건 (7 조)

1. 노동자 건강권 보장에 대한 정부의 책무 방안

UN의 경제·사회·문화권리위원회에 관한 국제규약에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와 4조에서도 정부의 산재예방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동안 이러한 책무를 제대로 이행해오지 못했고,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경제논리 앞에 그대로 내맡겨버렸다. 이것의 결과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붕괴와 산업재해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2. 증가하는 산재발생율, 사망률

정부보고서는 산재와 직업병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이것은 일부분만을 보여주는 것이고 98년 이후 지금까지(2000년)까지는 산재발생율이 급증하고 있다. 1999년 재해지수는 55,405명(0.74%)으로 전년도의 51,514명(0.68%)에 비해 3,891명(7.55%) 증가하였다. 사망자수도 1999년 2,291명(3.08%)으로 전년도의 2,212명(2.92%)에 비해 79명(3.57%)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세는 2000년 들어 더 심해지고 있는데 3월까지 재해지수는 14,113명으로 전년동기(10,914명) 3,199명(29.31%)이 증가하였다. 사망자수도 1999년 577명으로 전년도의 505명에 비해 72명(14.26%) 증가하였다.

▶ 질의사항

- (1)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 등 그동안의 정부정책에도 불구하고 산재발생이 줄어들고 있지않은 것과 관련해

앞으로 어떤 실효성있는 산재예방 조치를 취할 계획인가?

3. 산업안전보건관련 법·제도의 후퇴

IMF 외환위기를 전후해 신자유주의 기조의 정부 경제노동정책하에서 산업안전보건관련 각종 규제가 완화 및 폐지되었다.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이어 최근에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전체 96개 규제 중 27개가 폐지되고, 38개가 완화되었다.) 이 중에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성하는 안전관리자 등의 의무고용완화와 위험기계에 대한 검사의 완화등 완화되어서는 안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표>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규제완화 전후의 변화

구분	특조법 개정전 (`96.12)	특조법 개정후 (`98.12)	증감(율)
안전관리자	26,057	16,520	-9,537 (-36.6%)
보건관리자	11,296	9,208	-2,088 (-18.5%)

<출처: 노동부>

또한, 일선 산업안전 행정조직이 통합·광역화돼 37 개과에서 23 개과로 축소되고, 근로감독관수도 줄었다. (`98년 국정감사 자료) 이러한 산업안전보건관련규제의 완화가 결과적으로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후퇴를 가져왔고, 그간에 노동자의 투쟁으로 확보한 단협 중 안전보건관련 조항의 후퇴를 가져왔다.

▶ 질의사항

(1) 정부는 '안전·보건관리자의무고용 완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 완화' 등의 규제완화가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식을 약화시켜 산재증가를 가져온 것이 명백한 이상 이를 다시 복귀시킬 의사는 없는가?

4. 산재노동자의 치료권 제한

산재를 당한 노동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보상은 1995년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의 서비스질에 대한 문제와 산재보험관련 판정의 불공정성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IMF 이후에는 산재보험료, 1998년 2월에는 근로복지공단이 "IMF 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대책(산재보험 급여 거품제거대책)"이라는 지침을 만들어 산하지사에 하달하였는데, 그 내용은 경제위기로 인해 산재보험료가 제대로 징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중이거나 요양이 필요한 재해노동자에 대한 치료를 제한해 532억원을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지침하에서 산재노동자들은 치료가 거부되고 치료종결로 병원에서 밀려났다. 98년 민주노총 등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신고된 불이익 사례가 159 건이었다. 또한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6개의 대형병원의 산재지정 병원 거부, 연세대세브란스병원의 산재지정병원 반납으로 산재노동자들이 치료를 거부당하고 있다.

▶ 질의사항

- (1) 정부는 현재의 미흡한 산재노동자 치료, 재활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공의료기관(산재의료관리원)의 치료, 재활사업을 확대·강화할 계획은 없는가?
- (2) 정부는 모든 3차 의료기관의 산재의료기관 지정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은 없는가?

5. 영세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대책

5인미만 사업장은 그동안 산재보상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등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산재직업병 발생수준도 매우 심각하여 5인 이상사업장과 비교시 재해율 5.2배, 사망률 3배 수준이었다. 다행히 올해 7월 1일부터 산재보상보험법, 일부 산업안전보건법 확대적용실시로 영세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일차적 제도기반은 마련이 되었다. 하지만,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인력이나, 사업내용 개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그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 확대적용으로 69만개의 사업장이 기존 관리대상인 20만개소에 추가되는데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은 230명으로 이에 따르면 1인당 약 4천개소의 사업장, 36,000여명의 노동자를 담당하게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를 감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질의사항

- (1) 현재 산재보험제정의 일반회계전입금은 1%를 넘지않는다. 재정기반이 취약한 영세사업장의 산재보험 확대에 따라 국고지원 확대가 더욱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견은?
- (2) 정부는 노동부 산업안전담당 근로감독관수를 100%이상 증원할 계획이 있는가?

제7조 노동기본권 (노동3권)

1. 공무원과 대학교원의 노동3권 박탈

현재 한국에서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공무원과 대학교수의 노동3권이 완전하게 박탈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직장협의회 설립이 인정되게 되었지만 직장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아니고 부당노동행위나 쟁의행위 등의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3권의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 한편 초·중·고교원의 단결권이 인정되었지만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원의 노동조합결성권을 비롯한 노동3권은 완전하게 금지되고 있다.

▶ 질의사항

(1) 정부는 공무원과 대학교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언제,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2. 교원노조의 불완전한 노동3권 인정

한국정부가 교원노조를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1989년에 설립되어 모진 탄압을 받아왔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화되기는 하였으나 노동3권의 보장은 불완전하기만 하다. 우선 조직형태를 교원들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노동조합만을 결성할 수 있고 각 학교단위의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 단체교섭도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만 진행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의 대상사항도 매우 제한되어 있다. 한편 교원노조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에 의하여 완전하게 금지되고 있다.

▶ 질의사항

(1) 정부는 교원노조의 노동3권을 완전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어떠한 일정과 방법을 계획하고 있는가?

3.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형사탄압

한국정부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노동법개정이나 구조조정정책에 대한 반대를 요구하고 이루어지거나 조합원의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과 조정절차의 전치 등 법률상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 노동조합의 간부들에 대하여 위력으로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형법상의 업무방해(business interference)죄 조항을 적용하여 형사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파업이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채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로 노조간부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노동자의 파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기업별 단위노조형태가 대부분이므로,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장의 일정한 공간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사업장시설을 파괴하거나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정부가 경찰을 동원하여 노동자들의 파업을 강제로 진압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2000년 롯데호텔노동조합의 노동자들이 단체협약상의 일방중재조항의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하는데 정부는 경찰을 동원하여 강제로 진압하면서 많은 조합원들을 몽둥이 등으로 구타하여 많은 조합원들이 부상당하기까지 하였다.

한국조폐공사의 경우에는 검찰과 노동부 등 행정기관이 노조의 구조조정반대운동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로 노동조합의 파업을 유도하고는 노조간부들을 형사처벌하였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본부장의 취중 발언으로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져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특별검사제까지 도입되었다. 이는 한국의 정부기관이 노사문제를 공안적 시각에서 의도적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 질의사항

(1) 1997년 이후 파업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노조간부의 현황과 명단 및 그 혐의를 제출하고 이들에 대하여 완전하게 사면복권 내지 공소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는가?

(2) 정부는 과거 검찰이나 노동부 등 행정관청들이 노조를 탄압할 의도로 파업을 유도하고 노조간부들을 탄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들에 대하여 재조사할 의향은 없는가?

(3) 정부는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하여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을 중단할 의향이 있는가?

(4) 정부가 2000년 롯데호텔에 경찰을 투입하여 파업 중인 조합원들을 진압하면서 부상당한 조합원들은 몇 명이나 되고, 정부는 이들에 대하여 적절한 배상을 할 계획이 있는가?

4.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노사정위원회

김대중 정부가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출범시킨 노사정위원회는 합의사항을 정부가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노동계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고 더 이상 합의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여 파행을 겪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실업자의 초기업 단위노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노조법을 개정하여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문제를 노사자율로 결정하도록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위 문제들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노동시간단축,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실업의 문제,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문제, 노동현장에 팽배한 부당노동행위 등의 근절문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문제 등등 해결하여야 할 노동현안이 쌓여 있는데도 노사정위원회가 전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 질의사항

(1)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이 노사정위원회를 신뢰하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

(2)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미 합의된 내용들을 어떻게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가?

제 8장. 이주노동자의 권리 (6, 7, 8, 10, 13조)

1.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전반적인 현황

현재 한국은 3D업종의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산업기술연수생(연수취업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수생 제도는 정부기구가 아닌 이익집단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 온 연수생에게 2년의 연수과정 이후 자격시험을 거쳐 1년간 노동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산업연수생에 비해 소수이기는 하지만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기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현지법인 연수생들도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3D업종의 인력난을 실질적으로 보충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 미등록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연수생으로 입국하여 연수업체를 이탈했거나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넘긴 사람들이다.

전체	미등록 노동자	등록 노동자		
		전문기술직	연수생	
			현지법인 연수생	중기협 산업연수생
243,363명	153,879명	14,697명	20,032명	54,755명

법무부, 2000년 3월 말 현재

현재 이주노동자들의 숫자는 24만명이 넘지만 이들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그들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때문에 갖가지 불이익과 인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 질의사항

- (1) 한국은 노동자를 수출하기도 하는데, 일본의 경우 미등록 노동자 중 한국인이 가장 많을 정도다. 다른 한편,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법과 제도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인과 이주노동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조약'의 비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또 국내에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조약'에 준하는 이주노동자 보호법안을 제정할 계획이 있는가?
- (2) 현재 15만 3천여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은 무엇인가?

2. 한국의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과 현실

연수생들은 사실상 노동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연수생이라는 지위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완전한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노동3권 또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평균 12시간이 넘는 노동에 60-7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에 크게 못미치는 금액¹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수취업제도는 연수생들로 하여금 2년 연수 후 자격시험을 거쳐 1년간 노동자로 취업하게 하는 제도이다. 2000년 4월부터 이 제도가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이들의 상황은 연수생의 시절 보다 나아진 것 없이 권리 실현에 많은 제약 받고 있다(2000년 7월 구미 가톨릭근로자센터 성명서 및 한국 주요 일간지 보도)

현지법인 연수생의 경우, 정부의 관리 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보호지침을 발표했지만 현지법인 연수생들은 아직도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 계약을 강요당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또한 저임금과 하루 12시간, 주60-70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² 이들은 임금체불과 폭행을 당해도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에 이주노동자를 위한 담당 부서를 만들고 고충처리를 해주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실제 정부는 이들에 대한 보호와 관리에 매우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일선 지방노동사무소에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전담 근로감독관은 물론 그들과 자유롭게 의사 소통할 능력을 가진 근로감독관도 거의 없

¹ 5인 이상 사업장 통상임금 1,149,000 원/실질임금 1,308,000 원 출처: 노동부 2000년 5월 통계
² 5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노동시간은 주 44.7시간, 평균임금은 약 90만원이다 출처: 노동부 2000년 5월 통계

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급하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과 노동3권의 전면적용 그리고 노동부 내에 실질적인 전담 부서를 신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질의사항

- (1) 현재 정부의 외국인력정책은 연수생에게 정당한 노동권을 부여하지 않고, 불법취업을 조장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계획은 없는가?
- (2) 정부는 연수취업제 실시 이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는가? 연수생 신분과 연수취업제도로 인해 정식 노동자가 된 상태에서의 변화된 근로계약과 노동형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비교 조사 보고하라.
- (3) 정부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 3권을 한국의 노동자들과 동등하게 보장할 계획이 있는가? 또 정부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계획이 있는가?

3. 이주노동자 가족에 대한 보호와 교육권

한국에 본격적으로 이주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한지 10년이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결혼한 이주노동자간의 가족,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사이에 결혼한 가족이 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가족 단위로 이주해오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한 가족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직업취득과 교육, 주거의 문제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특히 남성 이주노동자가 한국인 여성과 결혼을 하는 경우 취업할 수 있는 비자(F2비자)가 발급되지 않고 있다. 현행 출입국 관리법상 한국인 남자의 처에게는 F2비자가 발급이 되지만, 한국인 여성의 배우자에게는 F2비자가 발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결혼을 한 경우에도 이주노동자인 남편의 노동은 불법취업이 되고 있고 안정적인 생존과 주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비자 갱신을 위해서는 1년 단위로 국외로 나갔다가 돌아와야만 한다. 이 밖에도 불법체류 전력 때문에 결혼 후에도 입국이 제재되어 가족이 강제로 헤어져 살거나, 전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혼인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미등록 신분의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취학연령에도 불구하고 학교입학이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정부는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조사는 물론,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계기관 차원의 어떠한 조치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 질의사항

- (1) 정상적인 결혼을 한 이주노동자 가족에게 생존의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취업이 가능한 F2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와 지금까지 F2비자 발급 신청과 거부에 대한 구체적 근거자료를 제시하라.
- (2) 불법체류 전력으로 인한 입국 제재 조치로, 결혼한 상태에서도 재입국이 거부되거나 혹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은 없는가?
- (3) 취학연령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자녀들에 대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시오.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

4.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한국에서 이주 노동자의 수는 급증하는 데 반해, 대다수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들에게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기관 이용시 높은 진료비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이는 의료이용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 질병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언어장벽으로 의사소통의 장벽이 있다는 점과 병원에 갈 시간조차 좀처럼 허용되지 않는 것도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는 이유가 된다.

▶ 질의사항

(1) 20여만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보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는가?

제 9 장. 사회보장 (9 조)

1. 취약계층의 사회보장 적용 배제

우리 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최근에 급속하게 팽창되고 있지만 확대과정에서 안정된 임금노동자층을 우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들보다 보호가 더 필요한 영세사업장 근로자,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99년 4월 전국민에게 확대된 국민연금의 경우, 전체 가입 대상자 1천 6백 27만 명 중 31%에 달하는 516만 명이 제외되어 있으며, 여기에 가입은 하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층까지 포함하면 가입대상자의 50% 정도가 연금에서 제외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국민연금은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기는 제도가 될 것이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역시 많은 임금노동자들을 배제시키고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 전체 임금노동자 924만명 중 35%에 이르는 310만명이 제외되어 있어 취업이 불규칙한 영세사업장 노동자나 비정규직들은 실업시 아무런 소득보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98년의 경우 전체 실업자 중 실업수당을 받는 비율은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실업수당 수혜율이 낮은 이유는 실제 실업이 많이 발생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이 고용보험에서 상당히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재보험의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적용비율이 여타 사회보험에 비해 높으나 영세노동자는 아직도 산재로 인한 빈곤화 가능성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다. 1999년 말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의 36.7%만이 산재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고 나머지 63.3%는 여전히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최근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노동자에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확대했으나 행정관리 능력의 미비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나라의 사회보험이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을 배제시키는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나라 사회보험은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질의사항

(1) 영세 사업장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사회보험에 포함시키는 데 필요한 정부의 정책과 대안은 무엇인가?

(2) 사회보험제도 내로 이들 취약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4대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통합,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있는가?

2. 부적절한 급여 수준의 문제

우리 나라는 외형적으로 4대 사회보험을 갖추었으나 의료보험과 고용보험 등의 급여수준이 매우 낮아 실제적인 위험분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보험의 경우는 법정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총 본인부담금이 50%를 상회하고 있어 의료에 대한 위험분산도구로서 의료보험의 의미가 무색할 지경이다. 특히 저소득층은 높은 본인부담금 문제로 의료이용 기회에 있어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 현금보상은 일정한 국제적 수준에 올라 있으나 피재 노동자들의 재활이나 직업훈련 등, 노동력 복원을 위한 현물서비스의 수준은 극히 낮아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보험의 경우도 직업소개 등을 원활하게 해주는 직업안정기관의 수와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실업자의 재취업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직업훈련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한 직업훈련 기회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 질의사항

(1)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 공공 직업훈련기관 확충, 재활훈련 기능의 대폭적 강화 등, 직접적인 현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과 계획은 있는가?

3. 열악한 사회보장예산

정부의 지속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사회보장예산의 규모는 여전히 열악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장에 대한 OECD 분류기준을 사용할 경우, 우리 나라의 총 사회복지예산은 GDP 대비 5%(95년)에 불과하다. 같은 해, 선진국의 GDP 대비 사회보장 예산은 미국 15.7%, 프랑스는 30.1%, 스웨덴은 33.1%, 그리고 일본은 13.8%에 달해 우리 나라는 선진국의 1/3에서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수치를 OECD 가입국과 비교해 보면, 멕시코와 더불어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사회보장예산이 적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예산확보를 위해 정부의 일반재정과 조세개혁을 하기보다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사회보장예산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특히 김대중 정부가 내세운 '생산적 복지 프로그램' 하에서도 사회보장예산은 크게 팽창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질의사항

(1) 사회보장예산의 규모가 적당하다고 보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의 사회보장예산이 적절하다고 보는가?

(2) 사회보장예산의 확대를 위해 정부는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예산 확대에 대한 일정은 있는가?

4. 저소득층 생활보장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저소득층 규모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단적인 증거로 정부통계에 의하면, 97년에 0.283이었던 지니계수가 98년에 0.316으로 벌어졌으며 99년에는 0.320으로 지니계수가 더욱 커졌다. NGO에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에 달한다는 보고를 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빈곤층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기본 생계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했으나, 구체적인 시행과정에서 재산기준이나 주거평수 기준 등 수급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로의 전환에 필요한 예산을 할당하지 않음으로 인해 빈민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데는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빈민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보호제도의 수급자격을 강화하여 일부 계층에게 본인부담금을 강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기초의료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 질의사항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격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많은 빈민들이 실제 수급자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수급자격을 완화할 용의는 있는가?
-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명실 상부한 저소득층 소득보장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투입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정부 예산의 확대 일정과 예정된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가?

5. 사회보장제도의 인프라 구축

사회보장제도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구 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인력의 양적, 질적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직업상담원 확대 등에 있어서 일정한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충분한 서비스를 전달하기에는 아직도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역단위에서 보건, 복지, 고용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행정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사회복지관련 행정기구와 보건전달체계, 그리고 실업문제를 다루는 행정체계가 각기 달리 운영됨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질의사항

- (1) 보건복지 및 실업대책 관련 인력이 충분하다고 보는지, 부족하다면 이 인력을 충원할 계획은 있는가?
- (2) 지역단위에서 보건, 복지, 실업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가?

제 10장. 여성의 보호 (10조)

1. 여성의 정치참여

국가 정책결정에 있어서 양성평등한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치분야 및 정책결정과정, 공직분야에 일정 정도 여성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2000년 현재 여성국회의원은 273명 중 16명(5.9%)으로써 세계 평균 여성국회의원 비율 12.3%, 유럽국가 35.9%, 아시아 국가 13.9%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제3기 여성지방의원의 수 역시 광역의원 5.9%, 기초의원 1.6%로써 가부장적이고 여성비하적인 정치문화가 여성의 정치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또한 98년 말 현재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여성공무원은 29.7%이며, 이중 5급 이상이 3.2%에 불과하다. 99년말 현재 여성장관 1명, 장관급 대우 1명이며 차관은 한명도 없고 2급 0.7%, 3급 1.8%, 4급 2.0%이다.

또한 한국정부는 여성의 권익을 국가정책에 반영하고 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분위기를 선도하고자 각급 기관의 여성위원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추진실적은 매우 미약해 98년 현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위원 참여현황은 8.2%에 불과하다. 이는 96년의 9.2%보다도 더 낮은 수치이다.

한국정부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남녀평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98년에 신설, 정부 내 여성업무를 총괄 조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집행력과 인원, 예산이 담보되지 않은 여성정책 전담기구는 정책조정기능의 형식화, 여성정책의 고유업무 결여, 정책을 수행할 조직역량의 부족,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부족, 차별구제기능 미약 등 그 권한과 집행력이 미약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00년 8월 현재 여성정책 전담기구를 '여성부'로 승격시키는 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그 案을 보면 기존 업무에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최소 여성관련업무만 이관하고 인력도 9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함으로써, 한 국가의 1개 부처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범위와 규모가 작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가 모호하여 집행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남녀차별개선업무 역시 종전과 마찬가지로 준수법권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 현재 '여성부' 신설안이 국회에 상정중이므로, 내년 정부보고서 심의시에는 여성정책전담기구가 신설된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 질의사항

- (1) 실질적으로 여성의 정치 및 고위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승진할당제, 국무위원 30% 우선임명 등의 적극적 대안이 있는가?
- (2) 여성부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타 부처의 여성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연계조직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가?

2. 성 폭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93년)'은 성폭력의 정의를 형법에 따라 '강간과 폭행에 관한 죄'로 규정하고 있어 많은 단계의 성폭력을 포함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특히 강간죄를 적용 받으려면 피해자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 반항했는가를 증명해야 하는 등 강간죄 해석의 태도가 여성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이에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

려면 성폭력의 정의 및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관한 죄'로 규정해야 한다. 또한 친고죄를 적용하고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기관도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는데 친고죄를 유지해 국가의 범죄처벌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가부장제 사회에서 피해자가 가해남성을 고소하기 어려운 조건을 감안한다면 친고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97년)'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97년)'의 제정은 가정폭력을 범죄로 설정하고 예방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은 확산시켰으나, 법 집행의 실효성이 약해서 실질적으로 가정폭력의 피해자나 그 자녀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 이 두 법 모두 여성단체가 법안을 만들고 국회의원 설득 과정을 거쳐 어렵게 통과시킨 법이나, 법 집행에 대한 정부의 자발성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 질의사항

(1) 정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친고죄 폐지, 성희롱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등 그 내용을 개정하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보호처분의 강력한 집행, 가해자 치료 등의 내용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할 의의가 있는가?

(2) 또한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와 함께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자녀에 대한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어린이 성폭력피해자를 돌보는 시설의 경우 피해 어린이의 학비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할 대안이 있는가?

3.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

경제의환위기 이후의 취업감소(job destruction)를 97년 8월과 비교해 보면 여성 725천명(83%), 남성 719천명(5.7%)이 줄어들어 경제위기의 충격이 여성에게 보다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실직자의 상당수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어 통계상의 실업률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hidden unemployment) 여성의 실제 실업률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고용조정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남녀차별이 나타났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성우선해고>이다. 농협중앙회에서는 자체 내 구조조정을 통해 704쌍의 사내주부직원 중 691명의 여성을 퇴출시키는 등 IMF 이후 성차별적 여성해고가 빈번히 자행되었다.

또한 여성노동자 중 70%가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어 여성노동자의 상당수가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1998년 12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는 임금노동자의 49.1%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여성 비정규직의 비율은 전체 여성노동자의 62.2%를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노동의 확산에 대한 우려는 경제위기 이전부터 지적되어 왔으며, 고용조정과정에서 정리해고제와 파견노동제의 법제화도 비정규노동의 확산에 한 몫을 하고 있다.

1999년 2월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조항이 신설되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 최근 성희롱에 대한 여성노동자들의 행정기관 진정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롯데호텔 여성조합원 328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비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70%가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직

장 내 성희롱의 문제가 여전히 상당히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장내 성희롱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직장내 성희롱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기에는 미흡하다.

직장내 성희롱과 함께 직장내 폭언, 폭행문제 또한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내 폭언, 폭행을 처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내노동자, 비임금 비정규직 형태인 골프장의 경기보조원 등 여성고용형태가 다변화되면서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있는 영역이 늘어나고 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경우, 아직도 조기 정년(40세) 관행이 온존하고 있으나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법적 구제방안이 미약한 실정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생후 1년 이내의 영아를 가진 여성취업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출산휴가를 포함하여 1년까지의 무급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있으나, 기업에 제공되는 육아휴직장려금이 매우 적고(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15만원, 대규모기업은 12만원), 기업의 인식 부재 등으로 육아휴직제도의 시행률 자체가 낮은데다(육아휴직 실시기업 23%, 49인 이하 사업장 0.4%), 대부분의 경우 휴직기간 중 임금보전이 전혀 안되고(무급으로 휴직을 제공하는 기업 69.8%, 생계보조비만 지급하는 기업 4.4%), 인신상의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이유 등으로 여성노동자의 사용률은 더욱 낮은 실정이다.

▶ 질의사항

(1)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을 4인 이하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하고, 비정규직에도 직장의료보험, 국민연금을 적용토록 하며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준수사항이 지켜지도록 철저히 감독할 의의가 있는가?

(2) 가내노동자와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노동관련법상 규제가 힘든 시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법적 대안이 있는가?

(3)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현행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 금지 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 의무와 보호조치를 명시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 3자에 의한 성희롱을 규제할 수 있도록 직장내 성희롱 가해 대상을 확대할 의의가 있는가?

(4) 휴직신청기간을 아이들의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인 '생후 3년'으로 연장하고, 출산휴가를 포함하여 1년의 유급육아휴직(임금의 70%)을 보장하며, 휴직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의의가 있는가?

4. 호주제도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장남과 차남에 따른 차별을 인정하는 호주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호주제에는 '호적'이라는 신분등록부에 출생이나 결혼 등의 신분변동내용을 호주(대부분 남성)를 기준으로 하여 '호주'의 어머니, 호주의 아내, 호주의 자녀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가족 내 차별을 인정하고 있고, 자녀의 성씨는 반드시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남녀불평등적 조항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부계혈통주의로 인해 아들을 낳지 못한 여성은 가정에서 불이익을 받으며 살고 있다.

이혼이나 재혼을 해서 아이들을 키우며 함께 살아도 여성의 호적에는 아이들을 기재할 수 없어, 법적으로는 단지 '동

거인'일 따름이다.

또한 97년 6월에 위헌결정이 내려진 동성동본 불혼규정은 2000년 8월 현재까지도 법 조항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위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호주제도는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어 여성계 및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연대하여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 질의사항

- (1) 현행 민법에서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삭제하고, '호주'를 중심으로 한 신분등록제도를 개인별 신분등록방식 또는 부부와 미혼의 자녀를 중심으로 한 기본가족별편제방식으로 전환할 의지가 있는가?

제 11 장 아동의 보호(10 조)

1. 노동착취로부터의 보호

아동노동과 관련하여, 정부는 1997년 3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최소고용연령을 13세에서 15세로 상향조정하였고, 1999년 1월 28일자로 ILO(국제노동기구)협약 제 138조(최소고용연령)를 비준하였다. 이로써, 13세 미만 아동의 노동이 전면금지 되고, 13세 이상 15세 미만 아동이 노동을 하려면 각 노동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아동노동착취에 대한 관라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불법고용(13세 미만 아동 고용이나 아동고용이 금지된 직종에서의 아동고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취직인허증은 아동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서, 한 해의 발급신청이 한 두건에 불과하다. 게다가, 각 지방노동관서는 일 년에 한번 정도 아동 불법고용을 단속해왔으나, IMF 이후에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경제위기의 극복이라는 명목으로, 힘없는 아동들이 법과 정부의 보호망 밖에서 노동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의 아르바이트 직원의 대부분이 아동인 현실 속에서, 아동의 노동을 특별히 관리하는 정부 내 담당부서가 없어, 노동 아동들은 저임금, 임금 체불, 위험한 노동환경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유흥업소의 아동고용이다. 대검찰청의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본부에 따르면, 99년 1월부터 6개월간 청소년 유흥업소 단속에서 적발된 유흥업 종사자 5,616명 중 2,584명(46%)이 10대 아동이었고, 이중 16세 미만의 아동이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 질의 사항

- (1) 아동이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특히, 대부분의 근로아동이 취업해 있는 5인 이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인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2) 노동부, 보건복지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어디에도 아동노동을 담당하는 부서는 없다. 아동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직업을 마련해주고, 이동을 고용한 사업장을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착취당한 아동이 호소할 수 있는 통합적인 장치를 마련할 생각이 있는가?

2.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

경제위기 이후, 실직가정, 해체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학대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이웃사랑회의 전국 16개 아동학대상담센터에 접수된 아동학대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96년 71건, 97년 159건, 98년 367건으로 해마다 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정부 출연 연구소인 한국보건사회연구소는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가정은 약 33만 8000여 가구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학대행위의 증가와 더불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학대 받은 아동의 대부분이 사회적 보호나 심리적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가정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동학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0년 7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 신고를 위한 긴급전화로 설치하고, 의료인, 교사, 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문요원에게 신고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아동학대신고 접수후 지체없이 출동하여 격려나 치료 등 긴급조치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정된 법은 아동학대의 예방보다는 처리 중심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가 일어나기 전에 학대의 원인을 제거하는 예방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경제적, 심리적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사회복지사 수는 너무 부족한 실정이다.

▶ 질의사항

- (1) 아동학대가 일어났던 가정에 대해 학대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는가? (예를 들어, 부모의 실적이 학대의 원인이었다면, 부모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정상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3. 요보호아동을 위한 특별한 보호

친부모와 헤어진 아동들에 대한 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아동들이 이곳 저곳으로 옮겨다녀야 하는 일시적 거주시설이 아닌 영구적인 가정(친가정 또는 입양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요보호아동이 영구적인 가정을 가지기 전까지는 가정적인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보호아동에게 가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소극적이다. 예를 들면, 정부는 요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에게 1인당 월 6만 5천원을 지급하는데, 이는 양육비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다. 또한, 대규모 보호시설 대신 가정형 보호를 지향하는 대안적 보호시설로 평가받는 그룹홈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 2000년 7월 시행되는 아동복지법 상의 '공동생활가정사업'에서도 정부는 그룹홈을 제의시켜 민간의 그룹홈들을 여전히 미인가 시설로, 열악한 조건 속에 방치하고 있다.

▶ 질의사항

- (1)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민간의 그룹홈들을 소규모 아동복지시설로 인정하고 재정지원을

제공할 계획은 없는가?

(2) 요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릴 계획은 없는가?

4. 소년소녀가장

부모가 죽거나, 양육을 포기하여 아동이 한 가정의 실질적인 가장역할을 해야 하는 소년소녀가장세대는 해마다 늘어나 1999년에는 7,924 세대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2000 년도에 1 인당 252,870 원으로, 세대당 가족원 평균 2 명으로 환산할 때 월평균 505,740 원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추정한 2000 년도 대도시 2 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570,122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다. 또한 정부지원을 받는 소년소녀가장세대 대상 수를 2000 년도 예산상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혜택을 받지 못하고 누락되는 소년소녀가장들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정부지원의 문제점은 지원금의 액수가 너무 적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조치나 결연사업 등이 너무 경제적 문제에만 치우쳐있다는 데 있다. 소년소녀가장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생계유지를 위한 돈 이상의 관심과 정신적 도움이다. 따라서 정부는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가정위탁보호제도와 후견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다.

▶ 질의사항

- (1) 아동만이 단독으로 세대를 형성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가구의 아동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 관리 및 상담, 보호를 맡을 가정도우미들을 정부차원에서 조직, 지원할 생각이 있는가?
- (2)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일반가정의 생계비, 아동 양육비를 고려하여 늘일 계획은 없는가?

5.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아동권리 유린

아동보호시설의 문제는 그것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예바다 농아원의 예는 이러한 보호시설의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내준다. 1996년 11월 농아학생들의 농성으로 알려지게 된 예바다 농아원의 인권 유린은 재단측에 의한 강제노동과 임금착취, 기본적인 생존의 위협, 성추행, 실종 및 사망사건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3년이 넘도록 농아학생들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호시설에서의 아동학대와 인권유린은 은폐되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 질의 사항

- (1) 현재, 보호시설에 대한 감독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중되어 있어 악용의 소지가 높다. 실제로, 예바다 사태의 경우, 관찰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이 3년이 넘도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단과 결탁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해당 지역의 학교,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동등한 자격으로 가지는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 있는가?
- (2) 예바다 농아원에서 일어난 아동인권유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책임자 처벌이나 보상, 농아원생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 등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밝히시오

제 12장. 장애인의 권리 (6, 7, 10, 13조)

1. 2000년 사회복지예산 중 장애인관련 예산은 147,631백 만원으로 전체 정부예산 93조원에 0.2%도 되지 않는다. 매년 일정규모씩 증가하고 있지만 현 예산으로는 세계보건기구가 추정하고 있는 전체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전년도 대비 금년 장애인복지예산이 30%나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하나의 생색 내기에 불과한 것이며, OECD가입국의 예산과 비교했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 단적인 예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설되어야 하는 장애인동수당과 보호수당이 2000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공공시설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소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98년 말 기준 47%에 불과해 장애인의 사회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전혀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현실적인 정부예산의 책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질의사항

- (1) 정부의 장애인복지 예산 결정 요인과 과정, 그리고 산출근거는?
- (2) 관련 전문가들의 장애인복지예산 결정 과정에의 참여 범위는?
- (3) 장애인복지예산은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을 대비 고려 범위는?

2.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장애인 훈련 기관 지원, 직업전문학교 건립, 장애인 취업이 용이한 사업체 고용 여건 조성을 위해 38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말하자면 일반 사회와 격리된, 그리고 대규모의 장애인만의 직업 훈련 기관 및 직업 전문 학교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일산장애인직업훈련원과 같은 대규모, 장애인만의 직업훈련시설을 전국에 4개나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산장애인직업훈련원에서는 경증의 장애인만이 직업훈련을 받고 있고, 이들은 일반 직업훈련원에서도 얼마든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일반 직업 훈련시설에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와 훈련을 받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장애인만의 직업훈련장을 설치하려 하는 것이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교육만 16여년을 넘게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취업은 하지 못하고 각종 훈련만 하게 하는 것이다. 노동을 통한 자아실현은 언제나 뒷전인 노동부의 장애인 직업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격리된 직업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은 장애인의 이직률이 거의 70%이상(일산장애인직업훈련원 졸업생의 의견)이라는 주장을 그냥 묵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직업훈련에 쓰일 예산을 장애인이 직접 노동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장애인 고용은 경증 장애인 중심의 정책이었다. 장애 특성상 실질적인 국가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직업을 갖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정책방안이 제시되지 못했다. 98년 1월 현재 근로시설 9개, 보호작업장 137개인

우리 나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의 여건을 조성해왔으나 이들 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판로에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제도 실시 기준'을 마련하여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대상품목은 행정봉투, 복사용지, 재생화장지, 칫솔, 연장갑, 쓰레기봉투 등 6개 품목에 한정해 놓았다. 그리고 1개 특별시, 6대 광역시 행정구역에 7개의 소매상을 운영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 질의사항

- (1) 일산장애인직업훈련원에서 교육받은 장애인 모두의 이직률은 얼마나 되며 취업 이후 사후관리 계획 및 실제 시행 여부는 어떤가?
- (2) 대규모, 격리된 장애인 직업훈련기관보다 일반 직업훈련원에서 장애인이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방안과, 훈련이나 교육보다는 장애인이 직접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 (3) 현재 장애인 생산품 판매 경로는 매우 소극적이다. 이 상황에서 월 5,000원 이하를 받는 장애인 사업장이 전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50%를 넘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의무구매제도 생산품 확대 계획을 밝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최저 임금을 보장할 방안이 있는가?

3. 1994년 이후 한국에서는 장애어린이의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의무교육 대상 연령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장애아동 교육 수혜율은 42.3%(1999년 10월 현재)일 뿐이다. 이 수치도 정확한 통계가 아니라 추정된 것이어서 실제 의무교육에서 소외된 장애어린이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특수교육진흥법의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제14조(취학의무의 면제 등)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해 장애아동 교육 권리를 감소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조기에 장애를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 및 교육을 제공해 장애 아동의 발달을 촉진하고 장애를 최소화함은 물론 이차적 장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기교육은 장애아동에게 '생명과도 같다. 또한 이런 조기교육은 아동이 학령기에 이르렀을 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교육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아직 이 시기의 자원에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어 이 시기의 교육을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사실 조기교육실(언어치료실 포함)과 복지관 조기교실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며, 특수학교의 유치부 196개, 특수유치학교 7개, 일반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특수학급 57개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조기 교육의 무상 규정(제5조)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월 수십만 원의 경제적 부담을 떠 안고 있는 실정이다.

▶ 질의사항

- (1) 50%를 넘는 의무교육에서 제외된 장애어린이에 대한 현재 교육부의 교육적 조치는 무엇이고 이 어린이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구체적으로 지역별, 장애별로 그 수치를 밝혀라.
- (2) 장애유아에게 생명과도 같은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부의 방안은 무엇인가?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지난 97년 제정, 98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99년에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전체 대상시설의 실태조사가 끝난 상황이다. 조사결과는 전체 대상시설의 48%정도에 편의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도 하다.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교육이나 직업을 갖기 위한 기본으로 '사회환경의 개선'이라는 부분에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워낙 시설이 노후하고 예산미련이 어려우며, 담당자의 전문성이 떨어져 설계나 보수 시 편의시설의 연계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성급히 설치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담당자와 기관장의 관심부족, 그로 인한 예산확보의 어려움, 일반인의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부족, 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그로 인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수립과 추진의 어려움, 건축, 교통관련 법규의 편의시설 관련 규정 미흡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부분은 너무도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점은 일반 시설물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이다. 법에 의한 대상시설은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공공기관, 공공시설물에 한정되어 있어, 실제 일상생활공간인 슈퍼마켓, 미용실, 약국, 근처식당, 옷가게 등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기본인식의 전환이 없다는, 그들의 장애를 이해하지 않고는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활발한 홍보가 필요하고 건축설계사들의 철저한 재교육 내지는 건축공학에서의 '보편적 디자인'교육 등 이것들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에 장애인등 이동약자의 접근문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복지부에서 '편의증진법'을 담당하더라도 실효성이 있고 전문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장애인관련 업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이동약자들의 보편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기본 시설물, 교통시설물을 갖추기 위한 것이기에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과 체계가 필요하다. 부처간의 이기주의도 편의시설을 더디게 확충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질의사항

- (1) 민간영역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한데, 현재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게다가 편의시설은 연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과 빠른 설치를 요구하는데, 이렇게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정부의 계획은?
- (2) 편의시설은 항상 경제적 효율성 문제와 부딪힌다.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장애인이 실제 이용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을, 정부는 적은 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 (3) 시설물의 설치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발달된 보장구의 보급이다. 그러나 아직 전동휠체어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고가이다 정부지원이 거의 없다.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동보다는 전동을 보급하여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동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무엇인가?

5. 현재 우리 나라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전무한 상황이다. 99년부터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상담실 및 쉼터 운영,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임신, 육아, 출산, 가정도우미제도 등을 실행한

다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여성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96년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족이나 사회부터 무시와 감금, 성폭력, 폭력 등을 당하고 있는 장애우 여성들이 많이 있다. 180명의 여성 장애우(기혼, 미혼포함)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70% 이상의 여성 장애우들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 여성장애인들의 가족이나, 형제에 의해 폭력을 당하고 있는 여성 장애우들이 74%에 달한다. 이처럼 여성 장애우들의 폭력에 대한 실정은 매우 심각하다. 또한 여성장애인들의 성폭행, 및 가정폭력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만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법적 절차 등 지원이 없다. 또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실업률에 대해서는 1999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실업률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에 실업 비율은 27.7%로 집계됐다. 또한 취업을 한 여성장애인들의 경우 대부분 단순노무직이나, 기능직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 장애우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정책 및 예산 지원이 거의 전무하다.

▶ 질의사항

(1) 장애 여성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전반적인 정책 계획은 무엇인가?

제 13장 주거권 (11 조)

1. 강제퇴거와 세입자 대책

정부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재개발 관련 사도의 조례”를 통해 공공개발사업 혹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퇴거를 당하는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강제 퇴거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적절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세입자 대책은 공공개발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퇴거해야 할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며, 민간개발로 인해 퇴거를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법적 보호 장치가 없다. 또 공공개발사업이나 재개발사업에서도 “미해당자라 하여 사업 계획이 결정되기 3개월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입자 대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퇴거를 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점유 안정성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일반논평 4에 열거된 원칙들에 분명히 위배되는 것이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퇴거를 당하고 현행법에 의해 대책을 제공해야 할 세입자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이주대책비가 제공된다. 공공개발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주대책비가 제공되고,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퇴거를 당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권 규약 2조 1항의 “모든 적절한 수단”을 활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한국의 정부보고서 216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자에 대한 임시수용 혹은 주택자금 융자지원 등의 조치에 대해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조치가 가옥주에게만 해당되고

세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임시수용, 융자 등의 조치가 가옥주만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절실한 조치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질의 사항

- (1) 재개발사업과 공공개발사업에서 세입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한한 규정을 개정하고 민간개발로 인하여 강제퇴거를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만들 의도는 있는가?
- (2) 도시재개발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시주거시설, 융자 등의 수단을 퇴거를 당하는 모든 가옥주와 세입자에 대해 적용할 의도는 있는가?

2. 공공임대주택 제공의 문제점

한국의 정부보고서 214항에 따르면, 1990년말 현재 총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9%이며 1990년대에 걸쳐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의 문제가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그러나, 1998년 상반기 도시가계조사에 따르면 월세가구 중 주거비가 가계지출의 30%를 넘는 가구가 25.6%에 이르는 등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 정부는 주거비 부담과 관련한 정책 지표와 과도한 주거비 부담에 대한 대책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의 노력의 하나로 임대주택 공급을 들고 있다. 물론 1988년 이후 영구임대주택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이 건설되었다. 하지만 영구임대주택은 1993년부터 건설이 중단되었으며, 이후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량은 영구임대주택과 비교할 때 크게 줄어들었다. 또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국가는 주택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주거 수요가 큰 사람이 적절한 주택을 부담가능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배정은 주거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에게만 돌아간다. 공공임대주택을 각 가구의 주거 수요를 고려하여 배분하고, 부담능력에 맞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정책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 질의 사항

- (1) 과도한 주거비 부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단계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
- (2) 공공임대주택의 배분과 관리 체계를 가구별 수요, 적정한 부담을 감안하여 적절한 주거를 제공한다는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개편할 의도는 있는가?

3. 주거빈곤 현황 파악과 최저주거기준의 활용 방안

우리나라는 국민의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가를 판단할 길이 없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을 건설하는 것에만 중심을 기울여 왔고, 빈곤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주거빈곤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 개인과 가구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택정책의 지표가 될 것이다. 2000년 현재 한국에는 5,000명 이상의 노숙자가 있고, 20% 이상의 가구가 주거빈곤 상태에 있다고 추산되고 있다.

다행히 서울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최저주거기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제시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 먼저 채택되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약 20%는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아오고 있다고 한다. 중앙정부에서도 2000년 이내에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최저주거기준이 중앙정부에서 제시되면 이를 바탕으로 각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알맞은 기준을 채택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최저주거기준이 마련되면 이를 기초로 주거빈곤 현황이 조사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숙, 과밀, 시설 불량, 점유 불안정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개인과 가구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질의 사항

- (1)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조사가 법제화되어야 하며, 지방정부에서도 이를 지역 특성에 맞게 설정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대한 정부의 생각은 어떠한가?
- (2) 노숙, 과밀, 시설 불량, 점유 불안정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빈곤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제 14장 건강권 (12조)

1. 대한민국 헌법 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1999년 제정한 보건의료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권 조약에서도 “가입국은 누구에게나 성취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의료 현실은 헌법과 법률, 사회권 규약의 정신을 어는 것 하나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2. 의료이용의 경제적 장벽

한국 정부는 1977년 처음 5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실시하였고 의료보험 시행 12년만에 전국민의료보험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의료보험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환자와 가족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많다. 전체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의 비중은 외래의 경우 70%, 입원의 경우 47%에 이르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의료보험은 차라리 “진료비 할인제도”라 부를 만하다. 의료보험 제도가 질병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보험의 좁은 급여범위도 의료이용과 건강보장의 경제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전진찰을 제외한 예방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상병수당도 제외되어 있다. 진단적 시술로 널리 보급되어 있는 초음파도 보험적용

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한약의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많은 의료비 부담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점은 저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호 제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의료보호의 급여범위가 의료보험의 급여범위와 같으므로, 의료보험 적용범위에서 벗어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인 의료보호 환자들도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이것은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에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의료보호 적용 대상은 전체 인구의 2-4% 수준에 불과하여, 의료보호 제도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7년 이후의 경제위기로 수많은 사람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표 1. 전국민 중 의료보호 적용인구의 비중 변화

연도	1995	1996	1997	1998
의료보호 인구 (%)	4.4	3.9	3.7	2.8

▶ 질의 사항

- (1) 의료보험의 실질 본인부담금을 2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 있는가? 의료보험의 급여에 상병수당, 예방서비스를 포함시킬 계획이 있는가?
- (2) 저소득층 의료이용시 의료보호 본인부담금 규정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 (3) 의료보호 적용인구를 현실에 맞게 대폭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

3.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방지

대한민국 정부의 보건의료 예산 수준은 대단히 열악한 수준이다. 보건의료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예산의 대부분은 사회보장 재원으로 쓰이고 실제 보건의료 사업에 쓰이는 예산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 보고서는 보건사업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나 이것을 비중 면에서 살펴보면 사실과 다르다. 1995년 정부 예산의 0.35%였던 것이 1996년 0.39%, 1997년 0.34%, 1998년 0.30%, 1999년 0.28%로 줄어들고 있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1999년 현재 정부 예산의 4.64% 수준에 불과하였다.

게다가 한국 의료체계는 기형적일 정도로 민간 부문이 압도적이다. 의료시설 면에서만 보더라도 1998년 현재 전체 의료기관의 90.7%가 민간의료기관이며 공공의료기관의 93%가 공공의료기관이다. 병상수 기준으로 보면 공공 부문이 84.5%, 민간 부문이 15.5%였다. 그나마 경제위기 과정에서의 공공의료기관 구조조정으로 공공의료기관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여서 민간부문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것은 1994년 사회권위원회 질의에 대한 정부의 답변과도 어긋나는 상황이며, 정부보고서는 이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이렇듯 민간의료기관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은 이익이 많이 남는 방식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제왕절개술율은 평균 43%로 세계보건기구 권

고기준 1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선진국 가운데 제왕절개술율이 높은 편인 미국의 20%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는 제왕절개분만 수가가 정상분만 수가보다 높은 데에서 비롯된다. 이윤추구형 의료체제와 무책임한 보험정책이 이러한 결과를 빚고 있는 것이다.

▶ 질의 사항

- (1) 10~15%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확충하여 의료에 대한 국민의 접근도를 향상시킬 계획은 있는가?
- (2) 이를 위해 정부의 보건 의료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의향이 있는가? 의향이 있다면 향후 5년 안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예산을 확충할 계획인가?

4. 소수자에 대한 건강 대책 미흡

노인, 빈민, 외국인노동자, 수감자 등 소수자 건강 상태에 관한 정부 차원의 보건통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수준 및 의료이용수준에 관한 통계는 전혀 생산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열악한 집단에 대한 건강대책이 대단히 비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보고서가 소수자 건강상태에 대한 상세한 통계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다.

먼저 빈민의 경우 앞서 언급한 의료보호 제도는 본인부담금의 존재, 취약한 급여범위, 병원의 의료보호 환자 기피 등으로 실질적인 의료보장 제도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960년 전체 인구의 29%였으나 2000년에는 7.1% 수준에 이르렀으며 2022년에는 14%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전히 노인건강에 대한 대책은 취약하다. 노인인구중 가장 취약한 저소득층, 독신거주 노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노인건강보장을 위한 정부예산 수준이 턱없이 낮아 건강과 복지 분야를 포함한 노인복지예산이 전체 정부예산의 0.15%로 일본(17%), 미국(25%)는 물론이고 중국의 3% 수준에도 크게 못미치고 있다. 다만 기존의 취약한 보건소 망을 중심으로 약간의 외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노인층에서 만성질환이 많음을 고려할 때, 급성병원 위주인 보건 의료 시설은 노인층의 필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만족스러운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을 누릴 노인들의 권리 현실화(일반논평 6의 34항)”라는 위원회의 견해도 분명히 어긋나는 것이다.

수감자의 건강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문제다. 현행 행형법은 수감자들의 건강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보다 대부분 “소장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나마 추상적이다. 법에 규정한 입소시 건강진단이나 건강검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필요한 경우 외부 병원에서의 진료를 받기도 쉽지 않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단지 52%의 응답자만이 외부 병원 입원이 쉽거나 보통이라고 했고 50%가 힘들거나 불가능했다고 응답했다. 물론 이들에게 의료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 질의 사항

- (1) 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수준 및 의료이용수준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계획이 있는가?

- (2) 빈민층, 특히 정신장애가 있는 빈민을 위해 정신보건 분야 정부예산을 책정할 계획이 있는가?
- (3) 노인들의 의료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인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할 용의가 있는가?
- (4) 현행 행형법에 수감자의 진료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용의가 있는가?

제 15장. 환경권 (12조)

1. 21세기의 국가발전은 모든 사회집단간의 환경정의의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국민은 환경의 편익과 부담을 공평하게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남성과 여성,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노인과 어린이, 도시와 농촌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환경오염의 피해를 보다 많이 입은 사람들은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오염자 또는 국가가 이들의 피해를 정당하게 보장해야 한다. 한국정부와 시민사회는 피해를 입는 불특정 다수 가운데 사회적·신체적 약자에 대한 책임을 직시하고 이들의 생활권과 환경권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현세대의 형평뿐만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형평을 고려하고 미래세대 환경권을 보장해야 한다.

현 세대는 자원과 에너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예측할 수 없는 과학기술의 개발은 매우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현 세대가 안전하게 처리할 수 없는 물질을 생산하고 그 폐기물을 미래세대에게 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의 결정권한을 빼앗는 일이다.

현재 한국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새만금간척사업과 경인운하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무분별한 유전자 조작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교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질의 사항

- (1) 미래세대의 환경권 보장을 국가적으로 천명하고 이를 실현할 법제도 방안은 있는가? 그리고 환경문제에 취약한 미래세대, 여성, 지역주민이 받을 수 있는 환경피해 구제방안과 환경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가?

2. 반세기 동안의 국토분단은 한반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이념과 국가체제를 달리한 채 상호 적대적 관계로 인해 환경·생태관리의 유기적 연계 측면에서 어려움을 주고 있다.

생태계의 파괴에 관한 한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남한과 북한이 모두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있다. 남한은 환경의식이 크게 신장되고 있으나, 산업 및 생활폐기물의 급증을 처리능력의 성장이 따라가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생산형 환경문제와 소비형 환경문제를 함께 안고 있다. 북한은 체제 자체의 본질적 비효율성, 낙후된 산업구조와 기술수준, 환경투자 여력의 부족 등으로 환경파괴가 매우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현재의 경제난을

타계하기 위해 환경오염방지 기술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경제협력을 비롯하여 대외지향적인 경제정책을 가속화할 경우 환경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장기간 국토분단에 따른 생태계의 단절과 고립화 현상을 극복하고 대가하천해양 등 남과 북이 공유하고 있는 환경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남북의 공동노력이 요구된다.

▶ 질의사항

(1) 남북의 화해분위기 속에서 남한의 기업에 의한 대북투자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남북경제협력은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화과정에서 수입된 '공해산업'으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했듯이 자칫 남한의 공해산업이 이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남한정부는 대북투자시 환경친화적인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가?

(2) 통일후의 환경복구비용을 줄이기 위해 남북한의 환경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남북환경협력을 위한 세부적인 프로그램과 방향은 무엇인가? 또한 NGO와 학계 전문가 등 민간차원의 남북환경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가?

3. 정부의 경제개발계획들은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 경인운하건설, 대형댐건설 등의 국토개발사업은 대가가 에너지와 자원의 낭비를 촉진함으로써 환경문제를 심화 시키며 국토의 생산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것으로 보이는 사업들이어서 한층 우려를 더하게 한다.

대표적인 환경파괴가 우려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은 서해안 갯벌 2만ha를 매립하는 세대 최대규모의 간척사업으로 이는 세계 5대 갯벌에 속하는 한국 서해안의 소중한 자연자원을 파괴하는 것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경강, 동진강 하구는 봄, 가을에 세계적인 화귀조류인 도요, 물떼새들의 중간 기착지이다. 97년 환경부에서 발표한 전국 철새 동시 센서스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만경강 하구에서 총 371,129개체, 동진강 하구에서 270,924개체가 조사되었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갯벌이 사라지게 되면 이곳에 깃 드는 화귀조류가 서식지를 잃고 멸종위기에 처하게 된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생태계 파괴, 경제적인 타당성의 결여, 새만금호의 수질문제 등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이다. 또한 미래세대가 공유할 보전가치를 파괴하여 현대대만이 일시적인 개발이익을 누리는 것은 세대간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새만금 간척사업뿐만 아니라 서해 해안선의 절반 이상을 다 막아 간척해서 직선화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간척이 된 땅들은 농경지나 공업용지로 활용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은 세계에서 제일 큰 간척사업으로 한국 국민들은 도시하수, 축산폐수와 산업폐수로 오염된 하천 물을 받아서 만든 시화호 간척 사업을 기억하고 있다. 새만금호에 유입될 만경강과 동진강도 비슷하게 오염된 하천이어서 앞으로 새만금호도 거의 같은 결과가 나타나리라 예견되고 있음에도 간척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이 완공되면 농경지 2만8천ha가 조성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해마다 약 3만ha의 농경지가 여러 명목의 개발사업으로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간척을 해서 늘어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내륙의 농경지가 공업용지나 도시용지로 전용되고 있어 또 다른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 질의사항

(1) 세계 5대 갯벌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새만금갯벌은 현 세대의 자산임과 동시에 미래세대의 자산임으로 보존하여 미래세대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보존가치가 있다. 이에 한국정부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할 계획은 있는가?

(2) 국책사업을 비롯한 지역의 환경과 생존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지역주민의 투표를 거치고 지역주민들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과 자자체의원의 탄핵과 소환 등을 가능하도록 지자체 관련 법안 등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주민투표제의 도입, 지자체장 자자체의원 탄핵소환 등을 가능하도록 지자체관련 법안을 개정할 용의는 있는가?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지역 생태계와 지역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환경용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가?

4. 대부분의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큰 위기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은 핵발전소 건설이다. 현재 핵발전소는 2006년까지 총 23기가 건설되고, 2030년까지는 총 50기가 건설될 계획인데, 이 계획대로라면 한국은 원전수에서는 세계 4위, 인구비례로는 세계 1위의 국가가 된다. 이러한 계획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06년까지의 핵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예산은 총 45조 규모이다. 한국정부는 핵발전중심의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료,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조직 즉 원자력체제(nuclear regime)를 형성하여 핵기술의 확대만이 경제, 에너지문제 나아가 환경문제까지도 당연히 해결해 줄 것이라는 정치적, 이념적 방안을 강화하며 사회, 정치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안정성과 경제성 등을 들어 세계적으로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며 더욱이 전력수요에 대한 수요관리나 대안에너지의 개발에 관심을 쏟지 않는 공급위주의 정책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여전히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다. 급속한 산업화시기에 확립한 화석연료와 핵에너지 시스템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 에너지의 공급정책만을 고수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 사용이 급속히 증가한 나라로 지목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도 급속히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 질의사항

(1) 석탄, 석유, 핵발전과 같은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과 제도, 정책을 재평가하고 에너지와 환경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기존의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에너지 절약, 효율성 제고,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전면적인 정책과 제도전환을 준비할 계획은 있는가?

(2) 향후 예정된 핵발전소 건설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가?

제 16장. 교육권 : 초,중등교육 (13, 14조)

1. 정부의 공교육 방침

유엔 사회권 조약 제 13조와 14조에서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무상교육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교육개혁 정기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면서, 수요자 부담의 원칙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교육을 시행한다는 미명하에, 그에 필요한 재정에 대해서는 수요자 즉, 학습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 이것은 유엔 사회권 위원회에서 요구한 무상교육의 확대와 국가의 공교육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질의사항

- (1)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이 유엔에서 요구하는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과 무상교육의 확대 방안과 반하는 것은 아닌가? 또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 (2) 96년 이후, 2000년까지 중학교 무상 교육대상 학생수의 증감자료를 제출하시오.
정부는 중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2. 열악한 교육재정

대한민국의 교육투자는 95년에 비해 달라진 것이 없다. 한국의 교육환경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대단히 열악하다. 96년 OECD자료를 보면 한국의 교원 대 학생 비율은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상태였고, 그리스 오스트리아보다는 두배가 넘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교육재정을 GNP대비 6%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98년 GNP대비 4.1%였던 교육부 예산이 99년 3.8%로 줄어들었다. 또한 99년의 중학교 일인당 공교육비는 98년에 비해 20%이상 감축되었다. 이러한 교육재정의 감축으로 중앙정부에서 단위 학교에 지급하는 학교운영비 또한 감축되었다.

▶ 질의사항

- (1) 정부에서 단위 학교에 지원하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축소할 이유는 무엇인가?

3. 교원의 경제사회적 지위

1999년 7월 교원노조 설립으로 교원들의 지위에 많은 향상이 있었다. 그러나,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해 교원노조는 노조로서의 활동을 벌여 나가는데 많은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IMF 구제 금융 이후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 교원의 정년을 단축하여 많은 교사들이 자신의 의지에 상관없이 교단에서 물러나게 해 교원의 신분적 안정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하였다.

교원의 경제 사회적 지위는 IMF 이후 실업사태가 발생하는 가운데 신분의 보장이라는 면에서 많은 상승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원의 보수체계는 중견기업 수준에도 모자라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유능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여건들보다는 교사 직급의 다단계화로 대표되는 교원들간의 경쟁을 요구하는 정책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교원노조에서는 강력히 반발하며 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노조의 협상 상황이 아니라며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 질의사항

- (1) 교원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 (2) 65세에서 62세로 교원의 정년을 단축한 근거는 무엇인가?
- (3) 교원의 신분보장과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어떤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는가? 또한 그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4. 열악한 학교환경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공간은 학교일 것이다. 90m²의 공간에 4-50명씩 되는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으며, 학교 전체 학생 수에 비해 탈의실, 휴게실, 식당, 화장실, 매점 등 기본적인 생활을 꾸려나기엔 필수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제공되어 있지 않다. 또한 두발, 복장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들까지 존재하는 학교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아주 많은 곳이라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열악한 학교 상황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에서 징계를 받는 경우가 발생한 바 있다.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질의사항

- (1) 대도시지역의 학생1인당 탈의실, 휴게실, 식당, 화장실, 매점 등의 편의시설 면적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시오. 그리고 현재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2) 학생과 교사들 사이에서 인권의식을 높이고 반인권적인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제 17장 교육의 권리 : 고등교육 (13조)

1. 대학별 교육여건의 격차

한국의 고등교육은 대학별 교육 여건의 격차 및 그로 인한 교육의 질의 격차가 크다. 사립대학은 국공립대학에 비해, 지방 대학은 중앙의 대학에 비해, 작은 대학은 큰 대학에 비해,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에 비해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 대학별, 대학간 교육여건의 격차는, 교육의 질의 격차로 이어지며, 격렬한 대학입시 경쟁의 근본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 대학의 교원확보율은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대학설립운영규정상의 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1999년도 교육부 국감제출자료에 근거하면 4년제의 경우 국공립의 경우에도 60%, 국립산업대는 40%를 겨우 상회하는 수준이며 사립대는 60%에도 미치지 못한다. 교사(시설)확보율 또한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1999, 교육부의 국회제출자료)

재단 전입금과 같은 사립대 재단의 재정지원 수준은 사립대 교육여건의 핵심지표이다. 사립대 재단의 재정후원은 미미한 수준이다. 앞의 자료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일반대, 산업대, 대학원대학, 각종 학교 포함)의 경우, 학교 회계의 법인회계를 합한 수입은 크게 운영수입과 자본 및 부채수입으로 구분되는 바, 운영수입 중 등록금 수입이 52.7%를 차지하는데 비해 재단전입금은 7.4%에 불과하다. 2년제 사립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욱 적다.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설립유형별 격차, 지역별 격차, 규모별 격차, 4년제-2년제간 격차 등 교육여건상의 대학간 격차를 줄여야만 한다. 이에 특히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균등한 교육교육 기회의 제공을 위해 특별한 정책적 배려를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다.

▶ 질의사항

- (1) 대학설립운영규정상 기준에 비추어 현재 대학의 전체 교원확보율과 교사확보율은 몇 %인가? 또한 이는 설립유형별(국공립대인가 사립대인가) 지역별(중앙인가 지방인가) 종류별(4년제인가 2년제인가) 규모별로 어떻게 다른가?
- (2) 대학설립운영규정상 교수 1인당 담당 학생 수의 기준은 몇 명이며, 실제로는 몇 명인가? 또한 대학간의 차이는 어떻게 다른가?
- (3) 교원확보율과 교사확보율 등의 대학별 교육여건 상의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여건 전반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방안은 무엇인가?

2. 교수 신분의 약화

대학의 본질적 사명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수의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대학은 자유로운 정신으로 사회에 대해 인식하고 참여함으로써 역사를 발전시키는 본질적 사명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자율에 기초한 교수 활동에 의존한다. 교수 신분의 보장은 대학내외의 부당한 권력이나 금력의 개입으로부터 정당한 교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한국 대학 교수들의 신분 약화는, 1975년 교수재임용제의 도입 및 1990년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가속화되어 왔다. 교수재임용제는 독재 권력에 비판·저항하는 교수들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도입된 이래 많은 부당 해직을 강요하면서 교수 일반에 대한 신분 보장의 전통과 기반을 파괴하여 왔다. 1990년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폐지 예고 되었던 재임용제를 강화존치시켰다. 이에 교수들은 부당 재임용 탈락에도 항거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됐으며, 교수 재임용제는 민주화를 부르짖는 이들에 대한 탄압의 상징으로 인식 되었다.

조만간 도입기로 된 계약제와 연봉제는 비정규 전문직으로서의 불안한 교수 신분을 더욱 위태롭게 하는 분위기이다. 교수들은, 자신들의 신분과 처우가 극도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기본권 유지를 위한 교수노조의 결성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신분의 위협이 더욱 직접적인 사립대학, 전문대학의 교수들은 교수노조만이 부당 해고·처우에 대비한 사실상의 유일한 자치조직으로 여기고 있다.

OECD 소속 국가들에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교수들의 노조 결성권은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어 있으나, 한국의 경우 교수 노조 결성은 아직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초·중·고교사들에게 인정되는 노조결성권이 대학교수들에게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교수들의 교원노조 결성 및 참여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교수노조는 교수들의 생존

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권력과 자본의 횡포로부터 교육과 학문의 자유와 자율을 지켜내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질의사항

- (1) 교수재임용제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수의 수는 얼마인가? 재임용탈락은 국공립과 사립간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이 중 재임용제의 악용으로 인한 부당 해직의 수는 얼마인가?
- (2) 교수가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구제 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정부는 교수 재임용제 악용으로 해직된 교수들을 위해 어떠한 구제 노력을 해왔는가?
- (3) 정부는 교수재임용제 자체의 폐지 혹은 개선을 위해 어떤 일을 해왔는가?
- (4) 계약제와 연봉제가 교수 재임용제보다 나은 방안인가? 이 제도의 악용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는 무엇이며 악용되었을 경우의 구제절차는 무엇인가?
- (5) 계약제와 같이 교수 신분을 약화시키는 제도는 교수들의 사회비판적 기능, 사회참여적 활동을 근본적으로 저하게 위축시킬 것이 분명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교수 신분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6) 교수노조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 (7) 사립대학 교수들의 열악한 신분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은 무엇인가?

제 18 장 문화적 권리(15 조)

1. 현재 한국의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자원의 접근권에 대한 보장정도는 심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표현의 자유만 하더라도, 순수한 문화예술인의 창작물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혐의로 이해왜곡되어 일신상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잠재적으로 대다수의 문화예술인이 가지고 있는 창작의 범위를 제약함으로써 자신의 문화적 발전을 추구하는 데 심대한 제약을 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가 창작물에 대한 검열장치인 사전심의제도를 등급분류 제도로 전환시킨 뜻은 높게 평가하지만, 이와 같은 등급분류제도가 일부 창작물에 취하는 '등급분류'라는 판정은 실질적으로 그 창작물에 대한 사전 검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한국정부는 문화 행사에 대해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정부 기구의 과도한 개입은 문화행사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2. 문화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작년 대법원에 의해 이적 표현물로 판정 받은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는 이미 올해 초 유엔인권위원회를 통해 "본 건에 대해 3년 이내에 심리를 열 것이며 본 작품을 폐기하지 말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하고, "이에 대해 한국정부가 6개